

한국여성학회 2015년 1차 학술포럼

# ‘폭력예방교육’을 말하다

: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주최 : 한국여성학회, 전북대학교 여교수회

후원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일시 : 2015년 4월 24일(금) 14:00~17:00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5-1) 111호

프로그램

[개 회 사] 14:00-14:10

[발 제] 14:10-15:20

사 회 : 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발 표 :

1. 현장에서 느끼는 폭력예방교육 실행의 문제점

황지영(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 폭력예방교육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

3. 다시, 여성주의적 성(폭력)교육을 고민한다

김신현경(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강사)

[휴 식] 15:20-15:30

[패널토론] 15:30-16:20

사 회 :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패 널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신상숙(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김홍미리(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플로어토론] 16:20-17:00

[저녁식사] 17:30

## 목차

### [발표문]

|                                |    |
|--------------------------------|----|
| 현장에서 느끼는 폭력예방교육 실행의 문제점 .....  | 1  |
| 폭력예방교육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 | 13 |
| 다시, 여성주의적 성(폭력)교육을 고민한다 .....  | 35 |

### [토론문]

|            |    |
|------------|----|
| 이미경 .....  | 57 |
| 신상숙 .....  | 62 |
| 김홍미리 ..... | 71 |

발표문

## 현장에서 느끼는 폭력예방교육 실행의 문제점

황지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된 이후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과 보호 법률로 분리되었다. 2000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로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법률로의 변화를 거쳤다.

1991년에는 서울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4년 전북에서는 성폭력예방치료센터가 개소하였고, 각 지역에서는 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성폭력상담소 설치기준이 만들어지고 1995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 구분             | 년도    | 주요추진내용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1992년 | - 성폭력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결의(3.2) - 여성정책심의위원회<br>- 성폭력근절 실무추진위원회(4.38) - 국무총리실<br>- 시·도에 보호업무지침 시달(5.18)<br>- 시·도에 보호시설 시범운영지침 시달(8.31)<br>.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서울 자매복지회관 지정) |
|                | 1994년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br>- 성폭력상담소 설치(11월)                                                                                                                   |
|                | 1995년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월)<br>-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1월)                                                                                                                       |
|                | 2000년 |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설(9월)                                                                                                                                                |

출처: 201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4

법률제정과 성폭력상담소의 개소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교육은 대부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과 성폭력의 개념이나 유형을 중심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 대상의 연령은 점차 낮아졌고, 성폭력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자기 몸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내용의 교육은 확대되었다. 대부분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인식 변화가 성폭력근절을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비부모교육, 학부모 교육 등이 확대되면서 성인들 대상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진행하였고,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역할을 통해 성폭력예방활동

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2013년 6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교육의 대상이 학생들에서 성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성폭력예방교육의 주체는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 교육의 대상은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국가기관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지 교육의 대상이 변화되고 확대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할 강사들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강사들의 교육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보완해야 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 1. 예방교육 정책의 변화

1999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 구분 |          | 성희롱예방교육                        | 성매매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예방교육                 |
|----|----------|--------------------------------|--------------------------|------------------------------------------------------------------|--------------------------|
| 도입 | 시기       | 1999년                          | 2004년                    | 2010년<br>(‘11.1월 시행)                                             | 2006년                    |
|    | 대상<br>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br>정부투자기관,<br>특수법인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 확대 | 시기       | 2003년                          | 2008년                    | 2013년<br>(6.19 시행)                                               | 2014년<br>(1.31 시행)       |
|    | 대상<br>기관 | 공공단체 확대                        | 국가기관,<br>지자체,<br>공공단체 확대 | 보육시설·유치원<br>확대 (‘11.10월)<br>국가기관,<br>지자체,<br>공공단체 확대<br>(‘13.6월) | 국가기관,<br>지자체,<br>공공단체 확대 |

출처: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p.5

새 정부 수립 후 국정과제 ‘4대악 근절’과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정사항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되었고, 2013년 ‘성폭력방지종합대책’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에서는 가해자처벌강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2013년 하반기에 시작된 ‘찾아가는 예방교육’이 2014년부터는 중앙 및 지역단위의 비의무대상자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는 이미 민간 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사업을 통해 교육활동이 이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비의무대상자에 대한 예방교육의 확대실시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기관, 다양한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성폭력에 대한 열악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왔던 기존의 단체들(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 등에서 일상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기관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2.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다음은 인터넷에 ‘성폭력’을 검색할 때 찾을 수 있는 개념정의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80년대 이전까지는 (부녀자)의 ‘정조에 관한 죄’로 여성개인보다 남편이나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진영에서 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정조’에 국한된 강간사안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인신매매, 아내구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혼인관계 내의 부녀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점도 강조되어 전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으로 해석이 확대되었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성(性)과 관련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폭력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근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위에 따라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위키백과)

1990년대 이후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남성 성기 중심적 정의에서 벗어나서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성폭력을 성별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였고,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성폭력이라는 정의는 성별에 따라 다른 성적 규범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성에 관한 담론이 여성의 몸을 성애화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볼 뿐 성과 관련된 여성들의 욕망과 의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여성들의 불쾌한 경험들을 성폭력으로 정의하였지만 오히려 모든 성적경험이 성폭력이 될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성폭력예방교육을 민간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지원하고 있거나 여성폭력이 성차별적 사회문화에서 발생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예방교육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거나 성별권력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때 가장 의미 있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여성의 대부분이 성폭력을 경험한다는 부분에서 성별권력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성폭력을 이야기하다보면 ‘성폭력’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성기삽입 중심의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거나 ‘폭력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가 없었을 경우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성폭력이 ‘성’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단지 ‘성적인’ 어떤 행위와 연관하여 생각하면서 성폭력이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성이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여성의 순결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은 이러한 여성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보이지 않게 드러남으로써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경험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성관계가 처음도 아니면서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등에

대한 통념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볼 내용> [요즘 군대] 성폭력 잡겠다고 성적 자기결정권 막을 수 있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4.11 08:00:00 송고

# 모 사단에 근무하는 미혼남 A대위는 갓 전입해온 B소위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B소위에게 애절한 마음이 전해졌고, B소위 역시 A 대위의 마음이 싫지 않았다. 둘은 금방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합의에 의할 지라도 직속상관과 부하 간 성관계가 적발될 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둘만에 애절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 어떤 연애사에도 변수는 있는 법. A대위의 집에서 둘의 결혼을 반대했다. 집안의 불화가 두 사람 간 불화로 번졌고, 결국 A대위는 B소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대위의 변심을 용납할 수 없었던 B소위는 A대위와의 관계를 주위에 털어놨다. A대위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군형법 상 직속상관과 부하 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처벌받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는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안이 현실화됐을 경우를 가정해 꾸며낸 이야기다. ... <생략> ....

-> 성폭력예방교육의 확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성폭력’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없을 경우 오히려 통념에 기반한 교육이 될 가능성도 많고, 성폭력을 ‘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더불어 여성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 존재로써가 아니라 단지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되면서 여성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다시 성차별적 인식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강사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책은 사회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성폭력예방교육 정책은 ‘성폭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는 단지 교육의 횟수만 늘리는 결과가 되고(실적 중심), 오히려 교육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여성가족부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과 통일성 있는 교육내용을 위해 강사들

을 위한 매뉴얼을 구성하고 배포하여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강의의 주제를 잡거나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반대로는 오히려 강사들의 충분한 내용적 고민이 없는 상태로 같은 내용만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교육기관이 매년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작년에 보았던 PPT가 올해도 반복되거나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매체에 보도되는 것처럼 극단적이고 심각한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 숨어있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의 실효성 있는 진행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분야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 <양평원 위촉 전문 강사 현황>

2015년 3월 현재 (단위 :명)

| 전체     | 성폭력<br>예방교육 | 성희롱<br>예방교육 | 성매매<br>예방교육 | 가정폭력<br>예방교육 | 폭력예방<br>통합교육 | 양성평등<br>교육 | 성별영향<br>분석평가<br>교육 | 성인지<br>인권통합<br>교육 |
|--------|-------------|-------------|-------------|--------------|--------------|------------|--------------------|-------------------|
| 2,482명 | 793명        | 557명        | 325명        | 268명         | 114명         | 285명       | 41명                | 99명               |

\* 성인지인권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2015년부터 전문강사 과정에서 제외(교육직무 연수 비위촉과정으로 운영)

출처: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p.50

앞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여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단체들의 일상적인 활동이었고, 이러한 활동들의 기반이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교육실적 평가. 배점표에서 전문 강사와 일반강

사를 구분하고 점수배점을 달리하면서 이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했던 강사라 할지라고 위의 표에서 보여주는 양평원의 위촉 전문 강사가 아닌 경우는 전문 강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 배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위촉강사를 통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전문성을 배제하는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정책시행 이전부터 이미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현장의 전문가들이 위촉강사라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 교육방법(30) | 30 | ①(집합) 내부직원 강의 (10)<br>②시청각교육(집합) (10)          |
|          |    | ①사이버교육(이수확인가능) (15)<br>②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이수 직원강의 (15) |
|          |    | (집합) 일반강사 교육 (20)                              |
|          |    | (집합) 전문강사 교육 (30)                              |

-> 그렇다면 양평원 위촉 강사가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활동가들이 양평원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위촉강사과정을 받고 위촉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강의의 질은 한 기관에서 공통적인 내용의 강의를 듣고 배출되는 강사들이라거나, 이들에게 표준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사의 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강의 모니터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이 강의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강의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보완되어질 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 4.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관련법 이행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었고, 비의무교육대상자들(모든 국민)에게도 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폭

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을 운영중에 있고, 지역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10개소, 2015년 18개소)

지역거점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현재 거점기관은 행정·실무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폭력예방교육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받은 강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이미 오랫동안 교육을 하고 있었던 소수의 현장 활동가들과 강의를 주로 하는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거점기관은 주로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일상적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단체들 대부분이어서 지역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강사들을 파악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외의 강사들과의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위촉강사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연계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거점기관은 교육신청을 받고 신청된 교육을 지역의 강사들에게 연계해야 하는데 거점기관에서 강사에 대한 파악이 거의 안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교육을 어떤 강사에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현장활동가들의 인프라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고, 위촉강사명단을 토대로 실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비의무교육 대상자들인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기관평가에서 평가배점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촉강사가 아닌 현장 활동가들에게 교육을 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결국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위촉강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 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균등한 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강사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과정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활동을 배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위촉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방식은 매우 일방적이고 통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태도가 아닌 좀 더 열린 태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나가야 필요가 있다.

-> 거점기관이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포함하고, 지속적인 워크숍등을 통해 교육의 내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주어졌을 때 실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은 국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나 감수성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화라는 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할 때 성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의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법의 변화와 함께 성폭력예방교육이 확대 시행이 좀 더 의미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성, 의무교육실행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의 과정에서는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민간의 단체들(성폭력상담소 및 여성단체 등)의 고민을 들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lt;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 현황('13년 ~ '15년)&gt;

| 구분               |    | 총괄 기관 (컨소시엄 기관)                              |                                                             |                              |
|------------------|----|----------------------------------------------|-------------------------------------------------------------|------------------------------|
| 중앙지원기관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시·도별             |    | '15년도                                        | '14년도                                                       | '13년도                        |
| 서울               |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 경기 남부            |    | (사)씨올여성회 부설<br>성폭력상담소                        | (사)씨올여성회 부설<br>성폭력상담소(한국가정법<br>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br>가정폭력상담소)     | (사)씨올여성회 부설<br>성폭력상담소        |
| 경기 북부            |    | (사)에코젠더                                      | (사)에코젠더<br>(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에코젠더                      |
| 인천               |    | (사)한국심리협회 인천지부<br>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br>전문기관 '하모니'  | (사)한국심리협회 인천지부<br>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br>전문기관 '하모니'(인천여<br>성가족복지연합) | (사)인천광역시아동·여성<br>안전지역연대실무협의회 |
| 강원               |    | 강릉 가정폭력·성폭력<br>상담소                           | (사)너브내가족상담센터<br>부설 홍천가족상담소<br>(영월성폭력상담소)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
| 충청·<br>대전·<br>세종 | 충북 |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 대전 YWCA<br>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대전 YWCA<br>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                  | 충남 |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                                                             |                              |
|                  | 대전 |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                              |
|                  | 세종 |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                              |                                                             |                              |
| 전라·<br>광주        | 광주 | (사)광주여성의전화                                   | (사)광주여성의전화                                                  | (재)전남여성플라자                   |
|                  | 전북 |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                                                             |                              |
|                  | 전남 | (재)전남여성플라자                                   |                                                             |                              |
| 경남·<br>부산·<br>울산 | 경남 | (사)좋은삶가족복지상담<br>연구소 부설 경남성교육<br>센터(마산가정상담센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                  | 부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                              |
|                  | 울산 |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                              |
| 경북·<br>대구        | 경북 |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br>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                  | 대구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                              |
| 제주               |    | 제주 YWCA 통합상담소                                | (사)제주여성인권연대<br>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사)제주여성인권연대<br>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출처: 폭력예방교육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자료집 p.42

발표문

## 폭력예방교육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



## 1. 폭력예방교육의 현황

폭력예방교육의 의무교육화는 최근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감소를 위한 정책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감소를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로의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 법제화와 더불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가 강화되었다. 2008년 성매매예방교육,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2014년 가정폭력예방교육을 공공기관 대상 의무교육으로 확대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2013년을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선포하였다(여성가족부a, 2014).

특히 2013년도 교육대상 및 분야 확대에 따라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운영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육의무대상기관들은 개별법에 각각 의무화되어 있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연 3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여성가족부에 교육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법적으로 의무화된 폭력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비로소 국가는 교육을 독려할 수 있게 되었고, 기관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부진하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2014년 1월부터<sup>1)</sup> 여성가족부는 (1) 의무교육실적을 언론 등에 공표하거나 (2)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3)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4) 평가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교육이수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및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진행되고 확대되는 과정은 폭력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는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정책변화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의 예방교육 의무대상자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예방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이 예방교육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첫째,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와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단순한 의무화된 교육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참여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우리사회의 성폭력의 피해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강사를 통해 전달되는 교육효과의 표준화시키면서 동시에 교육내용 대상별 분화되고 심화된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넷째,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능력을 향상시켜나갈 것인가?

다섯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의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공통된 요소들을 통합교육으로 담아낼 것인가?

여섯째, 수요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참가자의 평가를 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결과의 환류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대상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을 통해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정책 및 추진체계,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의무대상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지원 및 관리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크게 교육기관과 교육강사와 교육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10개의 권역별 지역지원기관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의 양성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의 만족도 조사, 현장 모니터링 실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지원 사업(전문 강사 파견 등), 공공기관 예방교육 지원·관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참여자는 의무대상인 공공기관 및 종사자와 찾아가는 성교육 대상자인 민간사업장 종사자, 지역주민(소상공인, 학부모)들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교육의무대상인 공공기관은 해당년도에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평가 배점표에 따라 해당년도 교육이수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예방교육 활동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지역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도 폭력예방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폭력예방교육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초기단계이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예방교육 프로그램 모델 발굴, 지역단위에서의 강사의 양성과 공급, 지역내의 교육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의 역할배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향후 협조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고 관리하던 민간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폭력예방체계가 구축된다면, 새로운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제공과 원활한 강사공급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 -1>과 같다.

<표 I-7> 폭력예방체계의 구성요소와 역할

| 폭력예방체계의 구성요소         |       | 담당주체                                                           | 역할                                                                                                                   |
|----------------------|-------|----------------------------------------------------------------|----------------------------------------------------------------------------------------------------------------------|
| 교육관리                 |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 대상 실적 점검<br>교육 부진기관에 대한 이행 조치 시행<br>교육담당기관 교육실적관리(폭력예방통합시스템)<br>교육효과에 자료 축적<br>프로그램 현황 수집 및 분석<br>민관 우수 프로그램 인증 |
| 교육실시                 | 기관    |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10개의 권역별 지역지원기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의 양성 및 관리<br>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br>강의 만족도 조사                                                                 |
|                      | 교육강사  | 전문강사<br>일반강사                                                   | 현장 모니터링 실시<br>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지원 사업 (전문 강사 파견 등)                                                                         |
|                      | 교육콘텐츠 | 국가표준의 생애주기별·대상별<br>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공공기관 예방교육 지원·관리<br>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
| 교육참여자                |       | 의무대상교육<br>(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라<br>해당년도 교육이수 실적 보고                                                                             |
|                      |       |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br>성매매 예방교육<br>(민간사업장 종사자,<br>지역주민(소상공인, 학부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전국 10개 지역<br>지원기관을 통해 일반 시민 대상 성폭력,<br>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                                              |
|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br>민간단체 |       |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지역별 특성화된 예방교육 프로그램 모델<br>발굴<br>지역단위에서의 강사의 양성과 공급<br>지역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지원)                                          |
| 민간단체(중앙과 지방)         |       | 민간단체                                                           | 기존 교육을 담당하였던 교육활동가를 통한<br>교육담당<br>새로운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제공<br>지역의 교육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

출처: 여성가족부a(201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3)

## 1) 의무대상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 가. 폭력예방교육 개요

2012년 16,0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16,000개 공공기관과 함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의무교육의 대상기관은 68,000개 기관이다. 2014년 위의 68,000개 기관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한 후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교육실적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도에는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대신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a, 2014: 57). 현재 예방교육 이수기관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상에 이수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여성가족부a, 2014: 8). 보고된 교육이수실적을 기반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이라는 폭력 유형별 교육실태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표 IV-2>는 16,600개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표이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은 16,554건(99.7%), 성매매는 16,241건(97.8%), 성폭력은 16,084건(96.9%)이다.

성희롱의 경우, 국가기관을 살펴보면 입법부가 4건(100%), 행정부가 1,454건(99.8%), 사법부가 77건(100%), 전체적으로는 1,535건(99.8%)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232건(95.1%), 광역단체가 542건(99.4%), 기초단체가 229건(100%), 전체적으로는 1,003건(98.5%)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1,518건(99.1%)이다. 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257건(99.6%), 지역교육청이 220건(100%), 전체적으로는 477건(99.8%)이었다. 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5,908건(100%), 중·고등학교가 3,174건(99.9%), 고등·고등기술학교가 2,344건(99.9%), 특수·기타학교가 188건(99.5%), 대학교·전문대학이 407건(98.3%), 전체적으로는 12,021건(99.9%)이다.

성매매의 경우, 국가기관을 살펴보면 입법부가 4건(100%), 행정부가 1,437건(98.6%), 사법부가 75건(97.4%), 전체적으로는 1,516건(98.6%)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199건(81.6%), 광역단체가 505건(92.7%), 기초단체가 226건(98.7%), 전체적으로는 930건(91.4%)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1,414건(92.3%)이다. 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249건(96.5%), 지역교육청이 217건(98.6%), 전체적으로는 466건(97.5%)이었다. 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5,882건(99.5%), 중·고등학교가 3,151건(99.2%), 고등·고등기술학교가 2,315건(98.7%), 특수·기타학교가 185건(97.9%), 대학교·전문대학이 382건(92.3%), 전체적으로는 11,915건(9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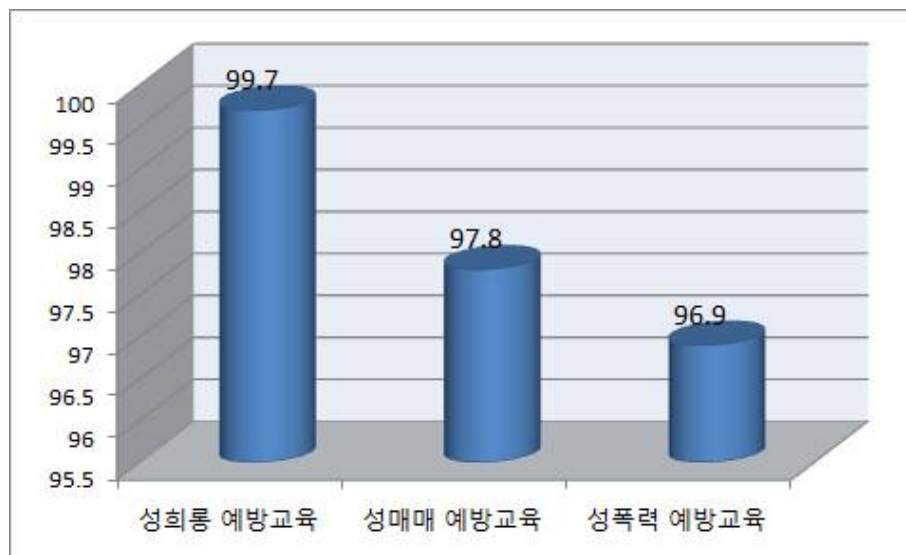
성폭력의 경우, 국가기관을 살펴보면 입법부가 4건(100%), 행정부가 76건(98.7%),

사법부가 1,417건(97.3%), 전체적으로는 1,498건(97.4%)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198건(81.1%), 광역단체가 486건(89.2%), 기초단체가 220건(96.1%), 전체적으로는 904건(88.8%)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1,311건(85.6%)이다. 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245건(95%), 지역교육청이 216건(98.2%), 전체적으로는 461건(96.4%)이었다. 학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가 5,883건(99.6%), 중·고등공민학교가 3,155건(99.3%), 고등·고등기술학교가 2,310건(98.5%), 특수·기타학교가 186건(98.4%), 대학교·전문대학이 376건(90.8%), 전체적으로는 11,910건(99%)이다.

<표 IV-7>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기관수, %)

| 구분                    |            | 교육<br>대상<br>기관<br>(a) | 성희롱<br>예방교육 |              | 성매매<br>예방교육 |              | 성폭력<br>예방교육 |              |
|-----------------------|------------|-----------------------|-------------|--------------|-------------|--------------|-------------|--------------|
|                       |            |                       | 실시<br>기관(b) | 실시율<br>(b/a) | 실시<br>기관(d) | 실시율<br>(d/a) | 실시<br>기관(c) | 실시율<br>(c/a) |
| 전체                    |            | 16,600                | 16,554      | 99.7         | 16,241      | 97.8         | 16,084      | 96.9         |
| 국<br>가<br>기<br>관<br>등 | 국가기관       | 1,538                 | 1,535       | 99.8         | 1,516       | 98.6         | 1,498       | 97.4         |
|                       | 입법         | 4                     | 4           | 100.0        | 4           | 100.0        | 4           | 100.0        |
|                       | 사법         | 77                    | 77          | 100.0        | 75          | 97.4         | 1,417       | 97.3         |
|                       | 행정         | 1,457                 | 1,454       | 99.8         | 1,437       | 98.6         | 76          | 98.7         |
|                       | 지방자치단체     | 1,018                 | 1,003       | 98.5         | 930         | 91.4         | 904         | 88.8         |
|                       | 지방의회       | 244                   | 232         | 95.1         | 199         | 81.6         | 198         | 81.1         |
|                       | 광역         | 545                   | 542         | 99.4         | 505         | 92.7         | 486         | 89.2         |
|                       | 기초         | 229                   | 229         | 100.0        | 226         | 98.7         | 220         | 96.1         |
|                       | 공직유관단체     | 1,532                 | 1,518       | 99.1         | 1,414       | 92.3         | 1,311       | 85.6         |
|                       | 교육청        | 478                   | 477         | 99.8         | 466         | 97.5         | 461         | 96.4         |
|                       | 시도         | 258                   | 257         | 99.6         | 249         | 96.5         | 245         | 95.0         |
|                       | 지역         | 220                   | 220         | 100.0        | 217         | 98.6         | 216         | 98.2         |
|                       | 소계(국가기관 등) | 4,566                 | 4,533       | 99.3         | 4,326       | 94.7         | 4,174       | 91.4         |
|                       | 초·중·고등학교   | 5,909                 | 5,908       | 100.0        | 5,882       | 99.5         | 5,883       | 99.6         |
| 각<br>급<br>학<br>교      | 중·고등공민학교   | 3,176                 | 3,174       | 99.9         | 3,151       | 99.2         | 3,155       | 99.3         |
|                       | 고등·고등기술학교  | 2,346                 | 2,344       | 99.9         | 2,315       | 98.7         | 2,310       | 98.5         |
|                       | 특수·기타학교    | 189                   | 188         | 99.5         | 185         | 97.9         | 186         | 98.4         |
|                       | 대학교·전문대학   | 414                   | 407         | 98.3         | 382         | 92.3         | 376         | 90.8         |
|                       | 소계(학교 등)   | 12,034                | 12,021      | 99.9         | 11,915      | 99.0         | 11,910      | 99.0         |



[그림 IV -11] 유형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 2.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 1)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FGI에 참여한 교육 수강생들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내용과 유형별 차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학교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교육 대상자들은 유형별 폭력예방교육의 차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의무화 되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은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의 4가지 교육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아동학대방지 등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을 위한 교육이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든 FGI에 참여한 교육 대상자들은 위의 4가지 교육의 내용상 차이점과 특징이 무엇인지 잘 기억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FGI에 참여한 강사들의 경우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이 폭력예방교육의 유형별 분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어떤 유형의 교육을 요구하는가 물었을 때, 교육 대상 기관의 담당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교육 중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교육을 받는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짚어주는 것이 교육의 내용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FGI에 참여한 강사 파견 기관 담당자들에 의하면 폭력예방교육에서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 및 가해자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든다. 교육 내용 중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

에서 특정 폭력의 위험을 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 중심의 대처 및 예방교육은 교육생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 모두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들고, 심지어는 가족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성폭력예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육을 받는 대상에게 성폭력 이야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요구될 때가 종종 있다. 성이 마치 성폭력만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2) 교육 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현재의 폭력예방교육은 공공기관 및 학교의 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무하다. 특히 유아기 아동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속해 있는 아동의 경우는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속해 있지 않고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들만큼 자주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어렵다.

이는 성인 중에서도 의무교육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할 여건이 안 되는 학부모들이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학부모 교육은 주로 낮 시간에 진행되고 있어서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하기가 더 어렵다.

또한 성인집단의 경우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세부 집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은 부족하다. 예를 들어, 같은 교사 집단이라 하더라도 학령기 이전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는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교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구성 또한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구성비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예는 군인이다. 군인은 주로 20대 초반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문제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군부대의 특성을 잘 인지하여 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노년층 역시 일반 성인과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방식과 노년층을 위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대상에 있어서 많은 FGI응답자가 폭력예방교육에 있어 리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사들과 강사파견기관 등은 교육을 신청하

는 기관장 및 고위 관리직이 얼마나 폭력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 일반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 변호사, 검사, 판사, 정당 관계자 등 사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3) 강사 수급 및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FGI에 참여한 강사파견기관 담당자들에 의하면 많은 기관들이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자체 수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라는 명칭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을 받은 강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FGI에 참여한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체계를 통해 강사를 양성한 후 이들을 전문강사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는 각 기관의 특징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들 강사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전문강사’라는 명칭은 교육을 수강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강사 부분에 있어서 FGI에 참여한 대상자들은-교육수강생 및 강사파견기관 담당자- 강사의 전문성으로 의사소통능력, 강의의 내용 전달력, 교육관련 지식, 강의에 대한 열정, 성에 대한 감수성 등이 강사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4)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아동과 학교 주변 환경 및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나 정보들을 잘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교사가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채로 학생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반별 강의를 할 때는 강사 자체의 교육 역량도 중요하지만, 담임교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참여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 수강생의 역할모델이 된다는 점 때문에 필수적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예방교육의 종류가 많아서 폭

력예방교육은 교육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예방교육 이외에도 금연 교육 등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교육에 비해 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안에 또래간 폭력 등의 주제와 함께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차별화된 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 3. 해결방안

#### 1)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교육내용의 다양화

##### 가. 폭력예방교육 대상의 순차적 확대

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정부·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폭력예방교육 대상자는 증가했으나,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직자 등 아직 많은 국민이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폭력예방은 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성인들을 교육해야 폭력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폭넓은 계층을 교육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인 폭력예방교육의 정책목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예방교육의 목표를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및 아동들, 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뿐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는 보호자 및 부모, 교사들에 대한 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은 성인들을 예방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성폭력방지법 제5조2항에만 규정되어 있는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다 많은 일반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나. 교육대상별 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

폭력예방교육이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의무교육대상자가 받는 교육의 내용이 매년 갱신되어서 교육을 받을수록 순차적으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동일한 의무교육대상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비슷비슷한 내용의 폭력예방교육을 받는다면 교육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수강생의 교육누적횟수에 따라 교육내용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폭력예방교육은 대상자 특성, 연령과 생애주기, 직장내 근속연수(예방교육 수강횟

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단계별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 참여자의 요구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은 단순 지식 정보 전달을 넘어서 교육 참여자의 생각의 변화와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행동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 참여자를 설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진다.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교육의 핵심 메시지는 같을 수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세부적인 교육내용의 구성안에 의존한다. 또한 그것은 교육 참여자의 특성 즉 인구학적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성(性), 폭력, 인권 등 교육주제와 관련 가치관에 따라 강조해야 할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특히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폭력예방을 위한 일상적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교육생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교육내용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은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2013년도 여가부, 양평원이 개발한 공공기관용, 민간기업 종사자용, 지역사회 지도자용(소상공인 등), 교사 및 학부모용 성폭력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개발·보급한 것이나, 2014년도 추진 중인 노인, 장애인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이러한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해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폭력의 취약 집단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 개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성폭력예방교육, 고학년은 또래성폭력예방, 중·고등학생은 데이트 성폭력예방교육 등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성에 비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남성들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흥미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기자재 및 교구 역시 대상자의 상황과 연령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는 성보호 교육이 단순히 예방차원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회기의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일상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수준에서 상황별 구체적인 대처방법 표준 메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폭력예방교육 관련 업무의 경우 성보호프로그램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

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책자는 교육과학부, 법무부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등 부처별로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간의 통일성이나 협조를 통해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 다. 표준강의안의 활용과 강사의 재량권 강화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책 방향은 민간차원의 자율 방임형으로 산발적, 중복적으로 이뤄졌던 것에서 국가표준의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계별로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는 정해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교육 참여자들은 강사나 교육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정해진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은 발굴하여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전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많은 강사들에게 동일한 내용 범위 안에서의 위험성을 줄이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꼭 필요한 개념이나 유형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표준강의안의 강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경력이 많은 강사들에게는 강사 특유의 스타일이나 교육방법, 기법 등 기술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표준 강의안은 수강생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이나 동영상의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최신 사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거나 이슈가 되는 현안문제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서 표준강의안이 활용되는 정도는 강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표준강의안에 너무 의존할 경우 강사의 재량권은 적어지고 강의내용에 강사의 전문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준강의안을 따라서 강의할 경우 강의는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에 대한 열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사의 가치관과 경험이 교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참여자의 요구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역량과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표준강의안을 통해서 강의의 내용과 질을 균질화시키면서 동시에 강사의 재량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 라. 폭력예방교육 방법의 다양화

폭력예방교육 내용의 다양화 못지않게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 역시 중요하다. 현

재 예방교육통합 관리시스템상에는 2013년도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은 5점, 시청각(집합)교육 토론은 10점, 전문가(집합)교육 토론은 20점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배점안의 취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교육에 더 많이 참여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는 데 있다. 또한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의 경우에도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토론식, 교구 활용 등 교육생의 자기주도적 참여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최소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교육실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방법의 제시는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별 교육요구도 조사 -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에 강사를 초빙하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 이외에 교육대상자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모바일 교육 등 교육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하여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생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단위 집합교육보다는 30명 내외의 적절한 규모로 수강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히 듣고 끝나기를 바라는 많은 인원의 수강생과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강사와 다수의 수강생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 가능할 뿐이다. 수강인원을 조절하려면 일단 몇 번에 나누어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난 것과 교육에 할당된 별도의 예산부족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와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에 따라 워크숍, 미팅,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 상담 방식, 상황극 등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마.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차별화

통합교육 운영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법 해당 조문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통합교육의 도입 취지는 개별 폭력예방의 내용을 성평등 관점으로 통합하여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통합교육 도입의 기본 취지는 교육 분야별 1

회 1시간이라는 운영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기관의 요구도에 따라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4개(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으로 각각 1시간씩 수행하게 하거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당사자들은 각각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교육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로 진행할 경우 같은 강사가 진행하지 않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가 거의 같은 내용일수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2014년도부터 늘어난 4시간의 교육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담당자가 인식하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통합교육과 개별교육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더불어 통합교육을 본래 제도 도입 취지대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교육요구도 분석과 이를 반영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기획역량을 교육담당자가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성평등한 관점에서 폭력예방의 이슈를 통합하는 양질의 내용 구성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폭력예방 통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는 2013년도 여성가족부(양평원 개발)의 표준 강의안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2014년도 양평원의 130여개 공공기관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시범운영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구도 파악 및 효과적인 교육운영 방안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도 초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기관에서는 통합운영을 선호함에 따라 교육대상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다양한 교육구성안 제시가 필요하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발생의 원인과 성차별적 구조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자가 속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실천해야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개별 폭력의 문제에서 놓칠 수 있었던 성차별과 폭력의 이슈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이 본래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문제를 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나아가 각각의 폭력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평등 관점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설명과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 2)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 가. 교육관리 중앙전담기구 강화

앞서 언급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역량 강화 등 교육인프라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예방교육지원의 추진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양평원이 폭력예방교육지원 중앙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전담기구로서의 양평원의 위상을 관련법에 명문화하여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담 인력 및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예방교육이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폭력예방교육이 평생교육, 시민사회 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행, 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전담기구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교육 대상 발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지원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모델이 발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에서 개발·운영 중인 우수프로그램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단계별 표준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예방교육 관련 국제적 기준 적용 및 우수 해외 사례 벤치마킹 등 폭력예방교육의 해외 교류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유효한 전략일 것이다.

### 나.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관리

폭력예방교육이 확대 의무화됨에 따라 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 전달되는 추진체계는 전문강사라는 점에서 자질있는 전문강사의 양성과 체계적 관리는 폭력예방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표준화된 교육자료와 전문성을 지닌 강사를 통해 전달되는 교육효과의 표준화의 달성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선택하는 외부 강사에 대해서 양평원의 공개 사이트에 등록된 강사는 ‘전문강사’로, 그 외는 ‘일반강사’로 구분하여 추가점수를 배정하고 있는 전문강사 제도는 보다 체계적인 강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화되고 표준화된 폭

력예방교육 인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보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교육 강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교육을 담당하였던 민간단체와 역할공조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강사풀을 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효과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강의 수행에 있어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강사풀을 구성하여 대상별 맞춤형 강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하는 형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분야별, 교육대상별 우수한 전문강사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선택권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강의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의 수시환류 시스템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강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이차, 삼차의 모니터링을 반복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강사의 관점이나 강의태도를 개선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제한된 인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요원의 수를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능한 많은 강의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강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니터링 사업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강사에 대한 재위촉과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다.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평가

현재 폭력예방교육은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감이 있으나, 교육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의 개선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전수에 대해 교육생 교육만족도 및 교육신청기관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주요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교육 수행기관인 지역지원기관 대표자 중심으로 교육 운영 현장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모니터링도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분석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차후 교육에 반영하는 수시환류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폭력예방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폭력예방교육의 목적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최근 이뤄진 폭력예방교육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폭력예방 의무교육에 대해서도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폭력예방 교육수요자와 공급자사이의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폭력예방교육의 효과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수성의 전환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라고 할 때, 단 기간의 효과성 측정을 통해서 예방교육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폭력의 발생추이와 폭력과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하여 보다 장기간 예방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시계열적 추적 자료를 생성해야할 것이다.

#### 라.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 정기 점검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 특별교육과 기관 명단 공개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예방교육에만 있었던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등 부진기관 제재규정이 '14년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분야도 확대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교육 부진기관 및 사건발생 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양평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별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특별히 관리할 수 있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예방대책 수립을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의 부진기관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별로 폭력예방교육 관리자가 자주 변동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의 시스템관리는 업무의 특성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익힌 후에 투입되어야 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다. 이로 인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폭력예방교육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예방교육시스템 관리자가 교체되지 않고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부진기관들의 경우 계획수립과 예산반영, 기관장 결재부분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 배분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점 기준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 그리고 부진기관의 언론공표와 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은 부진기관들의 교육참여를 독려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 3) 폭력예방교육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 가. 부처 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구축

중앙정부는 여성, 가족, 아동 관련 부서들 간의 공동협력 사업 및 지자체 내 타 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부처 간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된 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고, 타 법령상 의무교육과 연계된 경우 교육대상을 주관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성인 및 타 부처 개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유치원·초·중·고는 교육부가, 군인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되 여성가족부가 관련 내용 전문가 지원 또는 부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여성가족부, 2013b).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일반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개발하되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성인권교육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국 부처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부처 고유의 영역은 해당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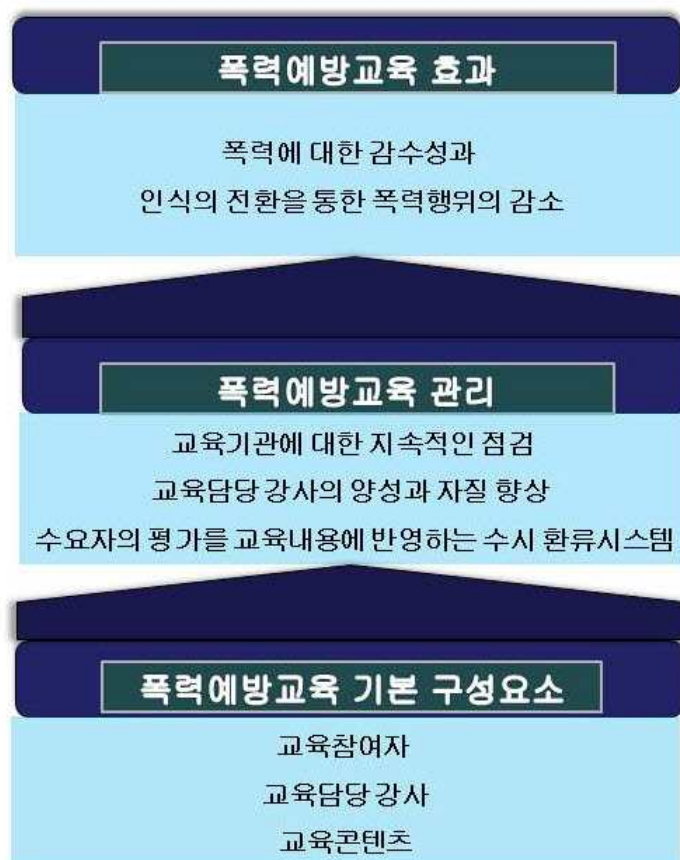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강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를 지역단위의 강사풀을 공유하고 강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직접 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설들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 여성긴급전화 1336(울산) 등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sup>2)</sup> 부산(부산여성가족개발), 울산(여성긴급전화 1336/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경기(성교육전시관), 전남(전남여성플라자/전남여성미래재단), 충남(여성긴급전화 1336/충남여성학

2) 기타 교육기관으로는 부산(부산여성가족개발), 울산(여성긴급전화 1336/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경기(성교육전시관), 전남(전남여성플라자/전남여성미래재단), 충남(여성긴급전화 1336/충남여성학교 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을 기재하였으며, 충북은 기타 시설은 미기입이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도차원의 교육지원과 강사양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여성가족부b, 2014).

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충북(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도차원의 교육 지원과 강사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 사업 추진 및 교육 대상 발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 지원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폭력예방교육 사업의 지역별 특성화 모델이 발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VII-12] 폭력예방교육 구성도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에서 개발·운영 중인 우수프로그램 발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품질제고 및 단계별 표준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또한 예방교육 관련 국제적 기준 적용 및 우수 해외 사례 벤치마킹 등 폭력예방교육의 해외 교류도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4) 소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예방교육 의무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교육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등의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대되어온 집단을 구별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방법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강의안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강사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현재 4개의 유형별 교육 이외에 통합교육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폭력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관리하는 중앙전담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서 교육 기관들이 성실하게 폭력예방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예방교육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폭력예방교육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하고, 각 부처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예방체계가 구축되고 원활하게 작동하여 교육수요자들의 반응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환류가 이루어지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질과 역량이 향상되고, 교육 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전체에 만연하는 폭력행위가 감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

다시, 여성주의적 성(폭력)교육을 고민한다

김신현경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1. 문제제기

최근 몇 년 사이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 네 개 분야 폭력예방교육에는 ‘성(sexuality)과 폭력의 연결’이라는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왔던 성교육(sex education)의 내용과 실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지금의 상황 즉, ‘폭력적인 성’이라는 개념이 학교 현장의 성교육을 규정하는 담론적 힘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교착상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다시 여성주의적 관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그려보고자 한다. 특히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의 내용과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폭력예방교육 중 성폭력예방교육은 초, 중, 고등학생들은 물론,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대학생들까지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sup>3)</sup>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에서 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 내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질문은 우선 대학에서 성과 관련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여성주의 교사로서의 관찰과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내 4년제 남녀공학 대학과 여자대학에서 성관련 교양과목을 가르쳐왔다. 그런데 새롭게 수업을 시작한 작년부터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2007, 8년 당시 만났던 대학생들이 중, 고등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받았는지를 물으면 대부분 ‘낙태 영상’을 봤다고 대답했던 데 반해, 작년부터 만난 이들은 ‘싫어요, 안 돼요’를 외쳐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처녀막’과 ‘질 오르가즘’의 신화는 여전히 건재하고, 피임에 대해서는 콘돔을 써야 한다는 말을 들어 보기만 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들이 대학에서 성관련 교양과목을 듣는 주요한 이유는 여전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성적 욕망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고, 성관계에서의 쾌락은 어떠한 것인지 ‘전문가’에게 ‘공적’으로 배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성교육에서의 ‘성’이란 1990년대 이전, 속옷 단속과 태아 낙태 영상을 통해 교육된 ‘결혼 내 모성으로서의 성’에서 과연 무엇이 변하고, 혹은 변하지 않은 개념일까? 혹시 성폭력 예방교육이 태아 낙태 영상을 대체하여 ‘결혼 바깥의 위험으로서의 성’을 강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3)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어린이집, 유치원이며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비정규직 및 파견포함) 및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원생,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부모까지 매년 각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여성가족부, 2013).

이런 ‘심증’은 몇 번의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강의 경험을 통해 더 굳어졌다. 이미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교육 강의에서 학교에 나가 가르치는 내용을 물으면 ‘싫어요, 안 돼요’를 외쳐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답변이 주로 돌아왔다. 더하여 ‘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없는지, 이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질문하고 마주치는 머쓱한 웃음 속에서 ‘폭력적 성’이라는 규정이 성교육의 기본 인식론이 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20여년 전 ‘여성주의적 성교육을 위한 모색’이라는 글에서 김현미는 대부분의 성교육 지침서들이 성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라고 전제하는데 왜 쾌락은 배제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여성주의 성교육은 여성의 성적 욕망이 중재되거나 규제되는 방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성의 정치학은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한 의미 부여와 성에 의한 통제의 모순적 요구를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김현미, 1997; 138)고 썼다. 이 모순적 요구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은 지난 20여년 간 여성주의자들이 분석하고 주장해 온 ‘권력관계로서의 성’이 ‘폭력으로서의 성’으로 귀결되어감에 따라 봉착하게 된 교착의 지점을 드러냄으로써 이 모순적 요구의 재탐구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자료들과 교육인적자원부(전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교육 자료들을 주요하게 분석했다. 이 자료들과의 비교를 위해 오랫동안 학교 바깥에서 성교육을 진행해온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관련 자료들도 살펴보았다. 그 외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의 남녀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교육에 대해 토론한 내용과 쪽글들도 참조하였다.

## 2.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성교육을 대신하게 되었나

학교 성교육은 성에 관한 당대의 주요 인식을 반영하는 장이지만 동시에 첨예한 담론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영국의 성교육에 관한 한 연구는 성교육 현장은 흔히 성에 관한 ‘본질(nature)’과 ‘현실(real)’ 사이의 투쟁의 장으로 재현되지만, 무엇이 성의 본질이고 현실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Alldred and David, 2007; 13~16). 특히 나이 어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이들의 성은 흔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서구 성교육에서의 성담론은 대개 ‘도덕성’, ‘위생’, ‘욕망’, ‘폭력과 희생, 피해’와 성을 연결시키는 방식이었다(Trudell, 1993; Campos, 2002). 서구 성교육에서 성을 인간 발달의 한 과정이면서 권력관계가 관철되는 장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페미니즘과 성해방 운동의 등장 이후부터다(Alldred

and David, 2007).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여성의 독점적인 모성 기능을 강조하던 한국의 성교육(김현미, 1997)도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과 위험으로서의 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흐름과 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흐름으로 나뉘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가 채택한 것으로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후자는 청소년운동단체, 몇몇 여성운동단체 및 자치단체가 채택한 것으로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강조한다(변혜정, 2014 : 62~67). 이에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 확립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여성주의의 반성폭력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의무규정이 아니었던 학교 성교육 의무규정 자체가 1980, 90년대 한국 여성주의 반성폭력운동의 성과가 집약되어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의 의거해 가능해졌다. 의무로 강화된 성교육은 성폭력예방 차원에서 주문된 셈이다.<sup>4)</sup> 그런데 당시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개념에서는 여성의 쾌락과 피해가 동시에 사유될 수 없었다(변혜정, 2004)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성교육 흐름이 결국 ‘폭력으로서의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예비되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1990년대 성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제시된 성의 개념은 ‘폭력으로서의 성’이라기보다 ‘권력관계로서의 성’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예컨대 1990년대를 풍미한 ‘성정치’ 개념의 등장은 성별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 그 자체의 권력관계를 제기한 것이었다(서동진, 1996; 정승화, 2000; 김은실, 2006). 또한 성별관계에서 폭력적으로 구성되는 성에 관한 문제제기 또한 법적 조항과 제도적 정책으로 바로 치환될 수 있는 것으로 사고했다기보다 일상과 문화에서 구성되는 남성 권력을 문제삼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신현경, 2001; 신상숙, 2007; 엄혜진, 2009). 이 흐름의 절정인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운동에서 채택한 성폭력 분류는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1) 같은 활동 공간 내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2) 남성 중심적인 문화의 연장으로 드러난 성폭력 3) 운동의 대의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4) 피해자에게 더욱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2차 가해가 바로 그것이다(엄혜진, 2009; 45~46). 이는 법에서 재현하는 남성 주체를 해체하지 않고 남성 성기 삽입 중심으로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분류하는 기존의 법적 분류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일상과 문화에서 구성되는 관계 중심의

4)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한 성교육 의무규정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은 수시 교육,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연간 10시간, 고등학교 2, 3학년은 연간 5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박혜림, 2007; 246).

성'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단체들이 성교육 현장에 활발하게 개입하기 시작(변혜정, 2014: 66)한 이유도 바로 성에 관한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식이 '정상적인 섹스'와 '비정상적인 폭력'의 구분을 넘어서지는 못 했으며 결국 이 시기 여성주의 성정치학은 '성별화된 폭력적 섹슈얼리티'라는 성 개념으로 수렴된다(신상숙, 2008).

이에 학교 외부에서의 성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성교육 의무 규정에 따른 교육인적 자원부의 여러 조치가 잇따랐던 2000년대 들어와 성교육은 학교폭력대책팀 내에서 '폭력'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변혜정, 2014: 63).<sup>5)</sup> 또한 성교육이 학교폭력대책팀의 업무가 된 2005년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 논의도 급증하기 시작한다.

특히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후,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관련 법률안 발의, 국회 입법 발의라는 패턴이 새롭게 확립된다(추지현, 2014). 언론은 가해자 개인들을 인격화하는 형태로 드러내면서 예외적인 범죄자의 문제로 성폭력 이슈를 구성하고(양정혜, 2010; 권인숙 · 이화연, 2011; 홍숙영, 2011), 법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경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흘러가게 된다.<sup>6)</sup> 이는 2009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2010년 '김길태 사건'의 대대적인 보도로 이어진다. 이 흐름 속에 2009년 폭력예방교육의 통합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 통과 또한 위치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교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교안의 한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처럼 갈등 해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사회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은 '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차원에서 일탈성향이나 심리장애 또는 부적절한 사회화나 부적응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관계에서의 평화와 인권에 초점을 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폭력에 호의적인 신념체계의 변화, 갈등해결기술 및 대인관계 효능감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인지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성인지적

5) 여성교육정책의 하나로 실행되던 성교육이 '폭력'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게 된 자세한 과정은 변혜정(2014)를 참조할 것.

6) 양정혜(2010)는 2008년 '나영이 사건'과 2010년 '부산 여중생 사건'의 언론보도를 '감시와 통제 강화' 프레임과 '인권침해 우려' 프레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감시와 통제 강화' 프레임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자연스럽게 주변화하면서 강력한 공권력이야말로 아동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예방책이자 해결방안이라는 논리를 유포시킨다. 반면 '인권침해 우려' 프레임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 처벌 강화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두 프레임은 결국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창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범위를 형법제도 내부로 한정짓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11).

이 문구를 보면 초기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의 목표는 ‘폭력예방을 위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 교육’이었으며, 이는 성인지적 관점 즉 성별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성별관계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적 권력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지 않거나 다른 차별과의 교차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성권력의 문제 예컨대 성 정체성, 장애와 성, 10대 임신, ‘원조교제’와 같은 이슈는 다루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폭력예방교육의 ‘통합성’은 성에 관한 통합적 인식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의무화된 성폭력 예방교육은 이처럼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간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엄벌주의’(추지현, 2014)의 맥락에 놓여있다. 이후 분석하겠지만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는 학교의 공식 성교육 또한 성에 관한 이러한 인식의 자장 아래 놓이게 된다. 결국 이는 2000년대 초 변혜정이 반성폭력운동의 선택 지점이라고 한 두 갈래 즉,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문제를 중심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일괄하여 재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너머에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망, 삶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젠더/섹슈얼리티 구성 전반을 문제화하여 다른 의미의 성폭력 개념을 재구성할 것인지’(변혜정, 2004: 49) 중 전자로의 수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 엄벌주의’를 추동한 것이 여성주의 세력만은 아니다. 이는 최근 한 연구자의 분석대로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하는 양형 강화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키는 ‘탈권위주의 담론’과 폭력 피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 담론’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피해자 보호 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추지현, 2014)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여성주의 성정치학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 논의와 관련한 미국 여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성주의 정치학자 크룩생크(Barbara Cruikshank)는 이제 ‘다른 여성을 돕느냐 마느냐의 여부보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질문하자고 제안한다(크룩생크, 2014(1999): 177). 필자는 이를 전유해 이제 한국 여성주의 성정치학에 중요한 것은 ‘폭력적 성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돕느냐 마느냐의 여부보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 3. 성 인식 성찰 없는 성폭력 ‘교육자’이자 ‘보호자’로서의 교사

학교 성폭력예방교육에서 교사는 부모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숙을 도와야 할 교육자’이자 이들을 ‘성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할 보호자’로 위치지어진다(여성가족부 ·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제작 학부모 교사 교육용 PPT 슬라이드 2). 이러한 위치 자체는 언뜻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폭력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성(sexuality)’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없이 답해지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선 점검되어야만 하는 것은 교사 자신의 성인식이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성인식 성찰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성에 대한 도덕적, 규범적 태도를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폭력예방’만을 강조하는 현재 분위기에서 이러한 점은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이자 보호자’로서 이들의 임무는 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성폭력 상황들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숙지하여,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가고 이후 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여성가족부 ·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제작 학부모 교사 교육용 PPT 슬라이드)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폭력’은 이제 법의 세부적인 조항이면서 의료적 진단과 처치를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는 막상 ‘교육자이자 보호자’로 호명된 당사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학교의 교사들의 느끼는 바에 대한 자료는 아니지만 [장애인 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 기본편]<sup>7)</sup>을 비교해서 참고할 만하다. 시설종사자들은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역할모델이자 보호자, 교사이며 권익옹호자’(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57)로 위치지어지는데, 이들이 정작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장애인의 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77)이다. ‘성폭력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 즉 시설에서 안전하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79)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대비책’을 알고 있다는 말은 의료적,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웬만큼 알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

7) 이 자료는 장애인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궁금해하는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잘 서술하고 있다. 즉 섹슈얼리티로서의 성과 장애의 교차 지점,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일반적 관점의 문제점 이후 젠더와 성폭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이 거주 장애인들에게 어떤 방식의 권력적 위치를 점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도 서술하여 이들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상과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폭력과 장난의 흐릿한 경계, 그 사이의 성에 대해서 ‘교육자이자 보호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오랜 관습과 규범을 문제삼지 않는 ‘성폭력예방교육’은 이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이에 제대로 답할 수 있으려면 교사 자신이 성에 대해 과연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한 자신만의 잣대로 이들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짐짓 곤혹스러운 듯 앞서 살펴본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교육용 자료에서는 ‘성’이라는 용어 대신 ‘아동의 발달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이들 ‘교육자이자 보호자’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권력관계가 관철되는 장으로서의 성’을 성찰하게 하기는 커녕 ‘생물학적 발달과정으로서의 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서 파생된 ‘법적, 의학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불운한 사건으로서의 성폭력’ 인식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학교 바깥 기관, 청소년운동단체나 여성운동단체들의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자신의 성찰이 대체로 교육 과정의 앞부분에 자리한다. 다음은 서울시가 YMCA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워크숍 자료의 일부다.

#### [스토리텔링과 섹슈얼리티]

#### 성(sexuality) 교육자로서 성찰하기

1) 나에게 성교육은 \_\_\_\_\_이다.

- 자기 자신을 성적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
- 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데 편안해야 한다.
- 법적 윤리적 책임 경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나에게 있어서 성이란 \_\_\_\_\_이다.

- 발달단계별 나의 성(sexuality)적 경험 히스토리 떠올리기
- 자신의 바디이미지 드러내기
- 자연인으로서 나의 성(sexuality)지식, 태도, 욕망과 행동 바라보기
-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사회 성문화와 나의 성 가치관 바라보기
- 개인적인 섹슈얼리티 구성과 동료집단, 성별, 세대별, 집단별 객관적 성찰하기

### 3)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 나는 아동, 청소년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 나는 10대들의 성문화와 트렌드에 대하여 수용적인가?
- 나는 10대들이 사용하는 성적 용어에 대하여 민감하게 이해를 하는가?
- 나는 10대들의 성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는가?
- 나는 법적으로 10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가?
- 나는 10대들에게 어떤 존재이고자 하는가?
-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고 광고할 것인가? (이명화, 2009: 15~16)

교사 자신의 성 인식을 경험과 태도,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성을 통해 자신을 상대화해 본 경험이 없는 교사가 ‘교육자이자 보호자’라는 위치를 경직되게 해석해 학습자들의 성적 상황을 일탈적인 것으로 타자화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가능하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적 발달과 성숙은 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자신이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관찰과 유연한 대처 능력이지 매뉴얼 암기력이 아니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30% 이상이 학교나 학원 교사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통계를 감안해보면 성폭력 대처와 관련한 의료적, 법적 지식을 전달 못지 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인식 점검을 통한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성찰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사’가 강의하는가이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주는 한 대학생의 경험담이다.

모든 성교육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제 성 인식을 조금 바꿔놨습니다. 학교 보건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야동의 순기능을 생각하는 등 학생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수업방식에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갖게 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성 인식은 성을 일상의 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 관련 인식은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성에 대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면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업 내용 측면에 있어서 성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다룰

수 있어야합니다. 특히 성관계 시 주의할 점들을 영상을 통해 배우거나 모형을 통한 콘돔사용 연습 등 실제 성관계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수업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남녀공학대학, 남학생)

#### 4. ‘순결 교육’을 대신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 ‘위험으로서의 성’의 재구성과 강화

여성주의에서 성적 쾌락을 다룬 이유는 1차적으로 그것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였고 그 다음으로 이를 통해 여성적 쾌락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김현미, 1997). 또한 청소년 그 중에서 10대 여성들의 욕망과 쾌락의 이야기는 이들이 스스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구분해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료화함으로써 성의 주체, 협상가가 되는 가능성을 확장시켜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쾌락과 욕망의 이야기가 없는 성교육은 오히려 성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책임감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Fine, 1998).

한국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 성교육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다루었다. 동시에 10대 여성은 예비 모성으로 가정되어 이들에게는 ‘순결’과 낙태 예방을 강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적 쾌락과 욕망, 성폭력과 피해 모두 다루어질 수 없었다. 최근 성폭력예방교육은 ‘폭력으로서의 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성폭력 가능성에 노출된 ‘위험한 성적 존재’로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이 강조되는 성교육에서 쾌락 특히 여성의 성적 쾌락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 행동은 날이 갈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신체적, 심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독립된 존재로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들은 넘쳐흐르는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을 접하게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방하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지식의 습득으로 인하여...학생 관련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 집단 성행위자, 환각 상태에서의 성행위자, 강간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 부산시 교육청, 2010: 7).

위 인용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의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성폭력예방교육이 그나마 견지하고자 하는 ‘성별화된 폭력적 성’에 대한 관점이 성교육의 장에서는 ‘일탈적인 사건, 사고’로 번역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생물학적 성’ 언어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언어를 모색한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여성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래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온 ‘처녀막’이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환상이나 남성 성기 삽입 위주의 성관계를 자연화하면서 여성을 쾌락의 수동적 객체로 구성하는 ‘질 오르가즘’의 신화는 갓 ‘미성년’ 시기를 벗어난 대학생들에게 아직도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수업 전반부에 자신의 성교육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 대학 입학 전 이러한 용어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례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래의 쪽글은 대부분의 사례들이 전형적으로 회고하는 성교육 경험이다.

저는 가정에서는 거의 성교육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해 잘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학창시절 때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사실 적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성에 대한 상식일 뿐, 성교육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진 못하는 수업 이였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가끔 외부 강사들이 와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위주의 성교육 수업은 저희에겐 웃고 떠드는 시간일 뿐이였습니다. 질주름에 대한 것을 스물한 살이 되서야 알게 된 것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문제는 쾌락과 욕망, 폭력과 피해의 경험과 느낌이 구체적으로 토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되는 ‘성폭력예방’이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법 조항에 끼워 맞춰진 경험만을 중심으로 한 단죄와 처벌은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성행하는 성을 매개로 한 장난과 폭력의 아슬아슬한 경계들을 어떻게 제대로 규명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남자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이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성폭력예방교육자료들은 ‘남자들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즉, 성폭력이 ‘생물학적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권력을 매개로 한 남성적인 폭력과 여성적인 피해의 문제’라는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 영상 자료(출처)에서 여아의 몸은 ‘아기를 만드는 소중한 곳’으로 재현되지만, 남아의 몸과 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의미의 성별관계에 입각한

성인식을 드러낸다.

반면 학교 바깥 성교육 기관에서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위계관계’라는 젠더 인식에 기반한 남성 성문화의 현실을 탐구하여 이를 교육자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남자아이들의 세계는 몸을 함부로 굴리는 세계임과 동시에 폭력의 세계, 권력의 세계이기도 하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를 굴복시키고 수치를 주는 것이다.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에서 ‘성’보다 더 ‘좋은’ 대상은 없다. 힘이 있는 것은 남성적인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은 여성적인 것이다. 남성적인 아이가 여성적인 아이에게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 아이를 성적으로 여성으로 다루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장난은 성에 대한 호기심/쾌락 추구와 폭력을 통한 권력 다툼/힘의 과시 혹은 호모소셜한 것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단지 ‘성폭력’이라고 하나의 범주로 묶어버리기에는 ‘성’과 ‘폭력’ 그리고 ‘사회화’ 사이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엄기호, 2009: 9)

이 글의 필자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과 성이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기 어려운 남자아이들은 때로 침해의 경험을 ‘가해’로 전환해버리기까지 한다. 예컨대 ‘자기 방에서 자기가 맨몸으로 있다가 여자동료가 방문을 발각한 경우, 처음에는 당황하고 여자동료에게 항의를 하지만, 잠시 후 다른 친구들에게 개가 내 몸을 봤는데 부끄러워하는 척 하면서 사실 볼 것은 다 보더라는 등 떠벌리는’ 행동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는 남자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자기 몸을 흥기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는 훈련’이라기보다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주권인식<sup>8)</sup>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또한 그것 자체로 진실이라기보다 토론되어야 할 경험과 해석이다. 문제는 현재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러한 구체적 경험, 감정, 문화를 드러내놓고 토론하여 성문화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이라기보다 ‘순결교육’을 대신해 ‘위험으로서의 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고착시키는 기능적인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법적·의학적 조치로 이루어진 매뉴얼이나 ‘안 돼요, 싫어요’를 그저 외치라고 일러주기보다<sup>8)</sup> 차라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성적 상황을 드러내고 이들과

8) 다음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주최한 2013년 서울시민 100인 원탁토론회 ‘청소년 성문화 현실과 성교육을 말하다’ 자료집에 실린 청소년들의 후기다.

함께 토론을 벌여야 한다. 예컨대 서로 좋아하는 남녀고등학생이 고시원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옆방에서 들은 남성이 침입하여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내용을 다룬 [내게 사랑은 너무 써]와 같은 영화를 보고 ‘성관계’와 ‘성폭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성 자체를 알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인 인식으로는 이런 영화를 함께 본다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 감정, 관계를 조율해야 할지 그들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폭력은 예방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교사들은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조연자로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 5. 성폭력의 젠더 정치를 통한 규범적 여성성의 재확립

### 1) 여자 아동과 청소년의 성 : ‘예비 모성 주체’에서 ‘위험한 성적 존재’로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무성적 존재’로 가정되었던 아동과 청소년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된 ‘위험한 성적 존재’로 그려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자 아동의 성은 ‘아이를 낳을 곳’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출처 - 영상자료), ‘무성적 존재이자 예비 모성 주체’로 가정되었던 10대 여성의 성은 선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 되었다. 이는 2008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13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연루된 ‘성적 문제’는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게 된 법적 변화 이후의 변화다. 한층 강화된 성폭력예방교육 자료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예컨대 여성가족부의 [아동안전지도 학생교육 및 제작 매뉴얼]이라는 자료는 각 학교에서 아동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자체적으로 만들 것을 권하면서 이를 위한 사전 현장 조사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범죄로부터 위험한 요소

-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길
-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건물과 건물 사이공간
- 가로등과 방법등 같은 조명이 부족한 공간 및 도로

---

똑같은 소리를 매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안 돼요! 어딜 만져! 저희들 사이에 유행이에요. 매년 성교육 철만 되면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떠든다니까요. (중 2 여)  
무조건 싫어요! 안 돼요!를 하는데 제가 진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진짜 말한 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싫어요! 안 돼요!를 하겠어요. (중 2 여)

-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공지 및 폐가
- 인적이 드문 논밭 및 야산 주변
- 평소 주민 이용이 적은 공원, 놀이터
-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1층 필로티 주차공간
- 고립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주변
- 야간에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주변공간(야간)
- 전반적으로 노후된 골목 및 시설물 주변
- 쓰레기가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는 공간
- 범죄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공간
- 평소 불량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은 아파트 중심의 중산층 거주지역과 구별되는, 가난한 동네 혹은 재개발 지역에 대한 묘사에 다를 아니다. 이런 지역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아동 성폭력의 경우 반 이상이 친인척에 의해 저질러지고, 청소년 성폭력은 30% 이상이 학교나 학원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안전지도’ 제작은 실제적인 효과보다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다카시는 후기 근대 사회에서 범죄와 특정 지역을 연결시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위 ‘방범공간이론’이 주목받는 배경으로 첫째, 중산층의 교외로의 유출과 상공업의 이전으로 인한 이너시티의 게토화라는 현상에서 도시주택지구 안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범죄 공포’가 현안이 되었고 둘째, 범죄대책의 목표가 범죄원인의 근절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더욱 행동주의적인 함의를 지니면서 범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왔으며 셋째,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재활성화하는 일이 효과적이고 저렴한 범죄통제수단으로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범죄의 원인이 아닌 범죄의 예방에 강조점을 두면서 ‘개인이 아니라 통계적 집합, 인구, 분포라는 관점에서 통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다카시, 2011; 257~259). 이런 통치권력의 작동은 인간을 개인 주체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합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폭력에 적용시켜보자면,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관계 특성이 규명되기보다 괴물적 존재라는 집합체로서의 가해자(추지현, 2014; 66~70),<sup>9)</sup>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여아와 10대 여성 집합체로서의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구성된다.

9)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괴물적인 몸’을 만들어 그를 통해 성폭력을 통제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루인(2012)을 참고할 것.

그 중에서도 10대 여성의 성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 이중적이다. 이들의 성은 폭력의 대상, 합의에 의한 관계, 의도적인 매매 사이를 순환하며 그 어디쯤에 자리잡는다. 성적 욕망과 쾌락, 폭력과 피해에 대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 사회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10대 여성들의 경험과 언어가 아니다. 바로 이들의 성을 욕망하며 매매와 관계의 경계를 오가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남성들의 경험과 언어가 이들의 경험을 성폭력, 성매매, 성관계라는 분류 속에 고정시키는 기준이 된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다. 서구에서도 1990년대 이후 성범죄와 ‘소아성애’에 대한 재현이 빈번해지는데, 한 연구는 이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등장하는 성적으로 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분석한다(Silverman and Wilson, 2002). 특히 여성의 경우 소녀들이 어른처럼 차려입고, 성인 여성들이 동안을 추구하는 등 가급적 어려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여성들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팽배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은 욕망의 주체를 남성으로 상정해야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무성적 존재’였던 여자 아동과 청소년이 남성 욕망의 대상인 ‘위험한 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수준에서 남성중심적 성적 쾌락이 재구성, 강화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개별 남성들이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남자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자 청소년들의 문제 상황은 탈선과 충동적 행위로 분석될 뿐이다. 지금 10대들의 성은 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실천이 매뉴얼화된 폭력 예방으로 수렴된 현실이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낳는가를 입증한다.

## 2) 모성 주체로서의 성인 여성상의 재강화

‘김길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한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이나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면, 이에 따른 책임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는 낳는다고 분석한다(권인숙 · 이화연, 2011; 103~104).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을 살피고 고르는 일이 어머니의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성폭력예방교육자료에서 성인 여성은 ‘아이’와 함께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보호하는 모성 주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재현된다(여성가족부 ·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공공기관용 슬라이드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아이

를 함께 지키는 것은 누구인가? 남성으로 재현되는 국가와 사회인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영상자료에서 쓰인 내레이션이 적당히 나이든 것 같은 여성의 목소리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동 성폭력 어른들의 대응]을 친절히 안내하고 [우리 아이 지키기]를 외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성인 여성-모성 주체에게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성인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지워진다. 이는 성폭력을 ‘절대적으로 힘없는 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이미지로 고정시키고, 그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경우를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서구에서도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은 경우 심리적 저항이라도 해서 ‘트라우마’를 일으켜야 성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Lamp, 1999; Gravey 1999; 변혜정, 2004에서 재인용)은 성폭력의 이미지가 고정될 경우 처할 수 있는 딜레마를 상기시킨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인 여성의 성에 대한 일상적, 문화적 혐오 문화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서 연원하는지도 모른다.

## 5. 결론 및 종합논의 : 한국 사회 ‘성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제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성폭력예방교육은 예비 모성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 아동, 남성 욕망의 대상인 10대 여성, 이들을 보호해야 할 모성으로서의 성인 여성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여성성을 탄생시키고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여성의 성을 욕망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남성 주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남성의 성은 폭력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남성의 폭력 피해는 드러나지 않고 사회적 남성성은 강화된다. 때문에 호모소셜과 호모섹슈얼의 경계에서 10대들이 경험하는 성 정체성 고민이나 왕따 경험들 또한 표면화되기 어렵다. 성폭력예방교육의 성 개념이 성교육을 전유하면서 수많은 ‘성적 상황’이 오히려 묻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대표하는 통치의 테크놀로지가 되었다.

러빈(Gayle Rubin)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 하에서의 미국 여성주의가 극도로 보수적인 성도덕을 재창조하는 데 앞장서게 된 상황을 분석하면서 여성주의는 젠더 억압에 관한 이론이지 섹슈얼리티 이론의 특권적인 장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별로부터 성억압과 위계의 모든 문제가 파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Rubin, 1984).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역시나 여성주의의 생물학에 기반한 ‘경직된’ 젠더 개념이 문제라고 보아야 할까? 젠더와 구분되는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억압적 상황이란

어떤 것인가? 한국 여성주의는 이에 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연구 또한 운동’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동의 전략적 장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성취한 성과와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의 해결이 이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위계와 권력관계’ 그리고 ‘성적인 것’을 구성하는 복잡다단한 힘들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정치와 전략에 관한 습관적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할까? 이 글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시작점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부산시교육청. 2010. 「대상별 성교육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소중한 성 바로알기」.
- 서울특별시·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3. 「2013 서울시민 100인 원탁토론 - “청소년 성문화 현실과 성교육을 말한다”」 자료집.
- 엄기호. 2009. “남자아이들과 몸에 대한 주권.”,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 워크숍 교재」.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FAQ」.
- 여성가족부. 「아동안전지도 학생교육 및 제작 매뉴얼 ver. 2.0」 PPT 슬라이드.
- 여성가족부·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성폭력예방교육 공공기관용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PPT 슬라이드.
- 여성가족부·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성폭력예방교육 학부모 · 교사용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PPT 슬라이드.
- 여성가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0. 「학교에서의 성인지적(Gender Perspective) 예방교육 교안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교폭력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장애인 시설종사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 여성가족부 영상자료. 「아동 성폭력 어른들의 대응」.
- 여성가족부 영상자료. 「우리 아이 지키기」.
- 이명화. 2009. “스토리텔링과 섹슈얼리티.”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실무자 워크숍 교재」.

### 2차 문헌

- 권인숙 · 이화연. 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편).
- 김신현경. 2001.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욕망과 폭력 ‘사이’?” 『여성과사회』 13. (사)한국여성연구소(편)
- 김은실. 2006. “강의를 열며 - 지구화 시대 한국 사회 성문화와 성 연구 방법.” 『쾌락,

- 폭력, 재현의 정치학 -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사)한국성폭력상담소(기획), 변혜정(역음). 파주: 동녘.
- 김현미. 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13(2). 한국여성학회(편).
- 다카시, 사카이. 2011. 『통치성과 ‘자유’ -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오하나 역. 서울: 그린비.
- 루인. 2012. “괴물을 발명하라 : 프리, 퀴어, 트랜스젠더, 화학적 거세 그리고 의료규범.”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서울: 자음과 모음.
- 박혜림. 2007.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 성적 주체의 추상화와 피해자화를 넘어서.” 『페미니즘연구』 7(1). (사)한국여성연구소(편).
- 변혜정. 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한국여성학회(편).
- \_\_\_\_\_. 2014.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교육정책의 방향 - 청소년의 성적 실천과 제도화 사이에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한국모자보건학회(편).
- 서동진. 1996.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서울: 문예마당.
- 신상숙. 2007.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더정치 - ‘국가폭력’과 ‘젠더폭력’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6. 한국사회사학회(편).
- \_\_\_\_\_. 2008.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2). (사)한국여성연구소(편).
- 양정혜. 2010.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10(2). 한국지역언론학회(편).
- 엄혜진. 2009.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 ‘100인위’ 운동의 수용과 현재적 착종.” 『페미니즘연구』 9(1). (사)한국여성연구소(편).
- 정승화. 2000. “나의 아름다운 전쟁.”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서울: 동녘.
- 추지현. 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30(3). 한국여성학회(편).
- 크룩생크, 바바라. 2014. 『민주주의와 통치성 -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심정보 역. 서울: 갈무리. (Cruikshank, Barbara(1999), *The Will to Empower : Democratic Citizen and Other Subjects*)
- 홍숙영. 2011. “TV 다큐멘터리의 아동성폭력 재현 방식 - ‘KBS 시사기획 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 한국콘텐츠학회(편).
- Allred, Pam and David, Miriam E. 2007. *Get Real about Sex - The Politics and Practice of Sex Education*,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 Campos, David. 2002. *Sex, Youth and Sex Education*, Santa Barbara, Denver & Oxford: ABC CLIO.
- Fine, Michell. 1998. "Sexuality, Schooling and Adolescent Females : The Missing Discourse of Desire", *Harvard Educational Review* 58(1).
- Rubin, Gayle. 1984. "Thinking Sex: Note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Vance, Carole S.(ed.),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 Silverman, Ian and Wilson, David C. 2002. *Innocence Betrayed: Paedophilia, the Media an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Trudell, Bonnie Nelson. 1993. *Doing Sex Educ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토론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김홍미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성평등 가치 스며들기<sup>10)</sup>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 1. 다시 생각해보는 ‘(여성)폭력’의 의미

- 지금까지 여성폭력 관련 정책토론회나 학술대회의 주제는 가해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에 집중되어왔으나, 최근 ‘예방교육’에 주목하는 반가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UN에서는 “인권측면에서 여성폭력을 분석하는 핵심 전제는 폭력의 특정 원인과 그 발생위험도를 높이는 요소가 보다 광범위하게 성에 근거한 체계적 여성차별 및 종속의 형태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임. 여성폭력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sup>11)</sup>이라고 밝힘.

- 따라서 여성폭력예방교육의 목적은 여성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여야 함.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sup>12)</sup>에서는 무엇이 성희롱인가라는 정보전달 중심의 접근이 성희롱을 성차별의 맥락에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희롱이 왜 문제인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본 학술포럼에서 ‘여성폭력예방교육’이란 용어대신 ‘폭력예방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도 역시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이었고, 용어선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는 한편으로는 폭력피해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의 94%(한국성폭력상담소 2014년 상담통계)가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을 뺀 ‘폭력’이란 용어의 선택은 자칫 여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축소·희석시킬 수 있음.

10) 이 토론문은 지난 4월 9일,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 주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토론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1) UN. 2008(2006). 『여성폭력의 종식: 담론에서 행동으로』. 여성부(역). 여성부. p.45.

12) 김양지영·이미경은. 2013. "직장 내 성희롱, 무엇을 교육하는가? :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교육내용", 「여성학과 30주년기념 학술마당 - 여성학, 돌(아)보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p.96.

## 2. 의무화된 교육이 갖는 ‘양날의 칼’에 주목해야

- 그동안 여성운동 및 국회와 정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폭력에 방교육의 의무화를 일구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임. 관련법이 마련되고 전담조직(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전담기관 등)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1999년부터 의무교육이 된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기계적인 금지조항을 익히는 것이 되어 예방교육의 실효성 논란뿐만 아니라 성희롱 규제에 대한 불만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sup>13)</sup>이 있음.

- 일부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보면, “교육대상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교육을 여러 번 수강하는 경우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면서 ‘지루한 교육’, ‘필요 없는 교육’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실행이나 조직문화를 고려해 볼 때 관리자급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성별, 연령별, 직급별, 부서별 교육욕구가 다양함에도 욕구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여 반발심이나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분석<sup>14)</sup>이 있음.

- 제도화된 인권교육의 경우에도 대개 일회성 단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단편적 지식만 전달될 뿐,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기르는 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sup>15)</sup>도 이어지고 있음.

- “공공기관 내 의무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 하에 국가는 그동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제도에 힘쓰는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를 통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이러한 정부 방침은 전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이라는 효과를 낳기

13) 이은심. 2010. “남성의 성문화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 30대 대졸 사무직 남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4) 배유경. 2014.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특성과 쟁점”. 「폭력과 안전을 넘어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학의 스토리텔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공동주최 학술포럼 자료집. p.9.

15) 배경내. 2012. “인권교육과 젠더감수성: 인권교육, 젠더감수성을 탐(探), 탐(耽)하다”. 「우리에게 젠더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피해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3년 평가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p.48. 배경내는 현행 인권교육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1) 권리가 아닌 에티켓과 배려 정도로 인권의 무게를 축소시키는 방식

(2) 법을 넘어서는 상상력과 불복종 정신의 자리를 지우고 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방식

(3) 교육에서 다루는 소재를 최대한 ‘비현재적인 것’으로 선정하는 방식(참여자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먼 곳’이나 과거의 문제로 인권을 다루는 것)

(4) 필요 이상으로 법률주의적 해석 틀에 붙잡아 둠으로써 법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5) 환경의 변화는 간과한 채 인성이나 도덕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6) 자유와 자기결정의 확대가 불러올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선 강조하는 방식 등

도 했지만 오히려 여성주의적 인식이나 여성운동적 기반 없는 기능적 전달교육을 양산해온 부정적 효과도 상당했음”이라는 지적<sup>16)</sup>도 있음.

- 실제 여성폭력예방교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교육참여자들의 반발과 불만을 직시하고, 그 요인분석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된 이면의 역효과를 줄이고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임.

### 3.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들

- 강사 자신이 성평등의 가치와 높은 인권감수성을 지녀야하고 강의 내용 전반에 이를 담아내야 하며, 강의가 정보의 전달을 넘어 ‘감동’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함.

- 현재 시도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이 체화된 교육이어야 할 것임. 여기에 통합의 의미와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통합적 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총 114명의 강사들이라는 현실에서 강사의 양적, 질적 자질을 어떻게 높힐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현재 이들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된 교육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과하고 있음).

- 대규모 집체교육이 아닌 소규모 토론식 강좌 운영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일상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인식을 넘어 생활 속 실천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

- 참여형, 토론형 강의를 교육방식의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철학 및 강사와 강의참여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필요로 함<sup>17)</sup>.

- 온라인 교육은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수가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면교육에서처럼 역동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sup>18)</sup>에 의하면,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현실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점, 쉽고 빠르게가 대세가 되어 기본만 갖추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점, 내용이 다양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과거에

16) 백미순. 2014. “세상을 바꾸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현장의 고민”. 「폭력과 안전을 넘어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학의 스토리텔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공동주최 학술포럼 자료집. p.34.

17) 배유경. 2014.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의 제도화 특성과 쟁점”. 「폭력과 안전을 넘어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학의 스토리텔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공동주최 학술포럼 자료집. p.12.

18) 이해경. 2013. “온라인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무법지대에 서서”. 「여성학과 30주년 기념 학술마당 - 여성학, 돌(아)보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pp.103-117.

멈춰져 있는 현실, 클릭 몇 번으로 수료가 가능한 점, 교육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로 들고 있음.

- 성평등 시각을 담아낸 다양한 교육자료(책, 동영상)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미디어세대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창의력, 재정적 지원 등이 요구됨. 특히 지식전달의 수준을 넘어 ‘감동’을 전달하여 교육참여자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2~3분짜리 짧은 영상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함.

- 체계적인 교육실적 점검 및 평가체계가 구축 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그 결과가 정책시행에 반영되는 환류시스템이 필요함.

- 중앙에 집중된 인적, 물적자원의 지방 배분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참여자들이 균등한 교육기회 및 질 높은 강의를 접할 수 있어야 함.

#### 4. 여성폭력은 ‘비이커’안의 일? :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기(문화)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 최근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교육 때 동성애는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교육해온 기존 내용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수업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sup>19)</sup>이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관련 안내>라는 공문(2015. 3. 31일자)을 통해 “‘동성애’에 대하여 관련 교과에서 ‘인권’ 측면에서 지도하고 있음. 다만,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임(학교 교육은 사회적·문화적·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연수회에서 사용된 자료의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동 자료 중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수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즉, 동성애에 관한 교육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양성평등교육원장은 “강사의 강의내용은 ‘강의 표준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성소수자의 권리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이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발생하는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맥

19) 한겨레신문. “‘성교육 때 동성애 언급말라’... 교육부 지침논란”. 2015. 3. 29일자.

락에 대한 이해 없이, 각각의 ‘비이커’에 든 폭력만을 좁게 설명함으로써 온전한 인권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임.

-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짚어지지 않은 채 ‘선언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나아가 찬·반 논쟁이 뜨거운 주제인 낙태 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져야만 인권존중의 가치 실현에 한 발자국 다가갈 것임.

## 5.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 현행 폭력예방교육 예산의 규모 및 관련 인력배치는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201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의무대상 뿐 아니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국민에게도 전문강사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전국 18개 권역별로 국고보조금으로 진행 중임. 한 해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국적으로 3,000회, 가정폭력 예방교육 500회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원임. 실제 이 예산으로는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누구를 여성폭력예방교육의 ‘전문가’로 볼 것인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봄<sup>20)</sup>. 예방교육의 유일한 ‘전문가집단’인 현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2015년 4월 9일 현재 총 2,482명)제도의 평가 및 수정·보완이 요구됨. 더불어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폭력예방교육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기대됨.

20)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폭력예방교육 시행 평가 시, 공공기관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한 경우 다른 일반 강사에 비해 점수를 높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일선 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온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예방교육 평가 시 강사배점을 달리하는 정책이 일선 상담소의 성폭력예방교육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음. (중략) 정부가 성폭력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상담소나 여성단체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제 하에 둬으로써 그러한 목표를 거두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은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민간부분의 다양한 시도와 상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주목해야 함. 백미순, 2014. “세상을 바꾸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현장의 고민”. 「폭력과 안전을 넘어서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학의 스토리텔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인권센터 공동주최 학술포럼 자료집. p.34.

## 폭력예방교육의 확대와 여성학의 과제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오늘 학술포럼의 취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폭력예방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여성주의 운동의 오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성폭력 외에도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펼쳐 왔으며, 각각의 법령들이 제정·시행된 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등 법제의 정비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성희롱’과 연관된 예방교육의 의무화는 이후 폭력예방교육의 제도화를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되었다. 1999년 (구)남녀차별금지법과 (구)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으로 성희롱 및 직장내 성희롱 방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타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례의 존재가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실시에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최근 확대 실시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현안과 쟁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는 발제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고민의 지점들을 공유해 주신 발제자 선생님들과 여성학회의 차원에서 이렇듯 시의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앞서 발제자들께서 성폭력 또는 전체 폭력예방교육의 정책, 현황이라든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두루 짚어 주시는 한편, 단지 위험과 폭력으로 환원되지 말아야 할 섹슈얼리티에 관한 여성주의적 성찰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다.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다른 토론과 달리 오늘의 여성학회 포럼은 운동, 정책, 학계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여성학의 과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논의의 자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지형과 최근의 변화 추세에 주목하면서 폭력예방교육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잡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조건과 여성학의 과제 등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 1. ‘폭력예방교육’? : 통합의 명칭과 프레임

성희롱에 이어 예방교육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아우르게 되면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폭력예방교육’란 표현이 자주 쓰이게 되었다. 여기서 열거되는 폭력은 사실상 UN이 말하는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violence)이자 여성이 대부분 그 피해자가 되는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이다. 이른바 ‘여성인권 3법’이 제정된 후 ‘여성폭력통합교육’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예방교육을 총괄하는 이름은 ‘폭력예방교육’으로 약칭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용례는 정책상의 편의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가지 폭력 유형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프레임과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기본 철학의 오랜 공백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일찍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운동이었고, 그 초기 단계에서 여성단체들은 강간, 추행 외에 아내구타, 매매춘, 포르노 등을 함께 포함하는 입법을 고려하였으나,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법률의 통과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성적인 함의를 갖는 폭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형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의 제정이란 전략을 취하였음).

### ○ ‘폭력예방교육’이란 명칭이 갖는 문제점

- 현실의 폭력은 ‘폭력’을 말하거나 강조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이 아님
- 문화와 언어가 성별화된 사회에서 ‘폭력’은 피해자에게만 존재하고 이해되는 언어일 뿐  
(폭력은 나쁘지만 폭력은 없다)
- 단순히 ‘폭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측면에서도 반발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폭력’을 강조하기보다 성별화된 언어와 문화 자체에서 출발해야 하며 인권, 젠더, 평등의 키워드를 재조합하여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의 의미론적/현실적 연관을 원칙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

- Liz Kelly가 말한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Kelly가 말했던 성폭력은 좁은 의미의 성폭력이 아니었음), 연속선의 개념은 여성교육에 대하여 유효
- 그러나 남성 대상 또는 가해자 교육에서 폭력의 피해에 대한 공감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이나 성별화된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요구됨

- 축소가 아닌 체계화로서의 통합을 위한 프레임과 철학, 명명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

## 2. 폭력예방교육의 확대 추세가 의미하는 것

발제자 선생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2013-2015년은 폭력예방교육의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인 시행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토론문 하단의 표 참조).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전국민 대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것 외에 ‘찾아가는 교육’, ‘맞춤 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듯 각종 폭력 예방교육이 제도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각종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교육대상의 범위와 폭이 넓어졌으나 개별 법령을 근거로 실시되는 각각의 예방교육이 자리잡아야 할 전반적인 체계와 방향에 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 폭력예방교육의 확대는 결국 교육대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국민’의 ‘평생교육화’를 의미하지만, 의무교육을 통한 제도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뤄지는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는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이 늘어나고 있음
- 현재 법령상 폭력예방교육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기반과 각각으로 분화되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제에서 지적되었듯이 교육수요자들이 차이를 변별할 만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
- 폭력예방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체계가 확충되었지만,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콘텐츠라든가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변형할 수 있는 강사인력이 부족하며, 현장에 기반을 둔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의 형식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 내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폭력의 피해에 대한 이해와 공감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

### 3. 지속가능한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이처럼 전국민의 평생교육화를 지향하며 확장·확대되는 폭력예방교육이 지속가능하려면, 발제자께서 지적하시듯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라든가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등 교육인프라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폭력예방교육지원의 추진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중앙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능과 역할에 따른 자기제한성도 필요하다. 오히려 각각의 장점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협치의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짜임새 있게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여성가족부)와 전국의 지역거점 기관을 관리하면서 강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기관(양성평등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 추진체계에 있어서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지역 NGO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율성과 안정적인 사업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민·관협력 방식은 위탁사업의 불안정성 외에도 정책 시행에 맞추어 단기적인 아웃소싱을 통하여 결과물을 급조해 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없지 않았고, 이처럼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사업 방식으로는 교육사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인적·물적 자원이 축적되기 어려움
- 또한 각 지역의 거점기관들 외에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갖춘 각 대학들의 인프라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과 현장, 그리고 현장에 기반을 둔 기초 연구와 기 배출된 전문강사들에 대한 심화교육을 연계시키는 복합적인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4. 전문강사의 양성·인증 시스템의 개선과 확충

현재 폭력예방교육에 관여하는 ‘전문강사’의 배경은 다양하다. 여가부의 자료에 따르면, 폭력예방 ‘전문강사’의 직업적 배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담과 강의를 해온 ‘현장활동가’(71.1%)이며, ‘공무원’(6.7%), ‘교사’(6.4%), ‘법조계’(5.3%), ‘의료계’(1.7%), ‘언론계’(3.4%), ‘기타’(5.4%)를 차지한다.

폭력예방교육은 대학의 여성학강좌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성별화된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이해가 교육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교육의 효과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권력관계를 변화시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정책에 힘입어 전국민의 다양성을 순식간에 포괄하게 된 이 ‘대중교육’의 난감한 장면들에서 살아 있는 문제의식과 열정을 불어넣고 반발과 물이 해에 직면하여 설득의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강사들에게 폭력에 관한 여성주의적인 성찰이 과연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 현재 20~80시간의 단기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강사들이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관련 경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교육만으로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 강의 현장에서 정보 수요가 높아지거나 강사 활동을 포기
- 전문강사과정의 선발 기준이라든가 강사들의 전문성을 단기 교육을 통해서 평가하거나 인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법령 중심의 교육, 동기유발 실패, 부적절한 발언과 자질논란, 강사에 의한 성희롱 등).
- 교육대상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은 선행 경력이 다양한 까닭에 필요한 지식의 내용이 다른 전문강사 양성 교육에서부터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법령의 이해, 대중교육의 기법, 갈등해결 및 설득의 기술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하지만, 성별화된 문화와 사회구조 속에 자리잡은 폭력의 발생맥락이라든가 다양한 양상으로, 때로는 모호하게 발현되는 폭력의 양상을 단기교육만으로 체득하기 어려움
  -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강좌를 다양하게 상설화하여, 필요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수강인정의 폭을 넓힘
- 전문강사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립하고 강사가 필요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강좌나 워크숍 등의 선택지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강사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교육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사들의 역량 강화는 강의 현장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을 접촉하는 상담·지원 현장의 경험과 이에 기반을 둔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5. 폭력예방교육의 확대와 여성학의 과제

폭력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되는 것은 여성학이 지향하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의 현실화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폭력예방교육의 확대가 곧 여성학의 대중화를 뜻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여학생운동이나 여성주의 운동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학습의 장이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정치 활동 속에서 여성학과 폭력예방교육은 분리되지 않았다. 각 대학들에서 여성학 강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대학원과정이 설치되는 등 여성학 연구와 교육의 장이 늘어난 것도 이 시기였다.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제도화되면서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온 ‘폭력예방교육’은 대학의 제도화된 여성학으로부터 일정하게 자립화되어 ‘예방교육’이란 정책적 범주를 통해 그 나름의 사회적인 비중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폭력예방교육’의 확대는 기존의 여성학 연구 및 교육 환경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예방교육을 통하여 이처럼 전면적으로 확장된 대중과의 접촉면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전문강사의 대면 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고, 대규모의 집합교육보다 소규모 교육을 권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전국민 대상의 평생교육으로 진화되고 있는 이 유례없는 대중교육이 ‘폭력예방교육’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또한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남아 있음
- 폭력예방교육은 인권과 (양성)평등에 관한 생활교육 위에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개방된 대중교육의 기회를 여성학의 대중화와 어떻게 접목시켜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
- 대중과의 접촉면에서 폭력예방교육에 축적된 경험과 기법을 받아들이는 한편, 폭력과 법령만을 강조하는 평면적인 교육을 넘어서 수 있도록 여성학적 관점의 비판적인 개입과 의견 개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여성학은 이름없는 폭력을 명명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행위의 폭력과 위험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피해자화하여 수동적인 주체로 만드는 모든 움직임에 반

- 대하여 왔으나, 대중은 물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책담당자들조차 그 문제의식과 언어의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폭력이 왜 피해가 되는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 여성학은 “이론적이다”, “어렵다”, “불편하다”는 통념을 넘어서는 중간 범주와 매개 언어의 발굴
  - 여성은 물론이고 피·가해자 남성의 언어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집적과 분석
- 초·중·고에서 현재 이뤄지는 학생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이 보건의적 의미의 성교육 또는 말 그대로 폭력을 강조하는 교육에 치중하기 쉽다면, 대학에서 빈도가 늘어나게 될 폭력예방교육은 여성학 강좌와의 차별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틈새가 더욱 벌어질 수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여성학 교양 교재
  -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교양강좌의 폭력예방교육 인정 방안 모색
- 여성학은 비판적 개입을 통하여 폭력예방교육의 심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특정 분야의 편중을 경계하며 여성학 연구와 교육 전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됨
- 전문강사들을 위한 특별강좌 개설과 대학원 전공 교과목 개발
  - 폭력예방교육의 통합 프레임, 운영체계, 효과 등에 관한 기초 연구
  -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이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가족’, ‘여성노동’, ‘성문화’ 등, 여성학 전반에 관한 기초연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함
- 여성학의 학문적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상담,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예방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젠더 주류화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폭력에 관한 법제화를 이뤄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여타 법령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 점차 강화됨
  - 그 결과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실무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증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정작 수많은 인력을 배출하는 학문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불식되지 않은 채 이를 문제삼는 학문보다 더 우월한 전문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폭력예방교육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심

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정당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법학 등 인접 학문이나 관련 자격시험에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는 여성학 관련 교과목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등, 단기교육을 넘어서 정책 및 복지 인력의 재생산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적 개입과 젠더 주류화를 모색하는 학회 차원의 노력이 요망됨

## [참고자료]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 구 분      |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교육 실시 주체 |      | - 국가기관등 <sup>21)</sup> 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br>-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sup>22)</sup> 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br>-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sup>22)</sup> 의 장<br>-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br>-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sup>22)</sup> 의 장 |
| 도입       | 시기   | 1999년<br>※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2004년                                                                     | 2010년('11.1월 시행)                                                                            | 2007년('08.2월 시행)                                                           |
|          |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 확대       | 시기   | 2003년<br>※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2008년                                                                     | 2011년, 2012년<br>('13.6월 시행)                                                                 | 2014년(1.31일 시행)                                                            |
|          | 대상기관 | 공공단체 <sup>22)</sup> 확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 2011년 :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11.10월 시행)<br>- 2012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13.6월 시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
| 현행 근거법   |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br>※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2005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 교육 대상    | 필수   | - 기관장을 포함 전직원<br>※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정의규정에 의거 지침에 규정됨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br>- 중·고등학생<br>※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br>- 학생 등<br>※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br>- 학생 등<br>※ 시행령에 명문화                               |
|          |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          |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 선택   |                                                             |                                                                           | 학생, 보육아동, 원생                                                                                | 학생                                                                         |
| 교육횟수*    |      | 연 1회, 1시간 이상<br>※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1시간은 고시(시행규칙) 규정되어 있음 | 연 1회, 1시간 이상<br>※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 연 1회, 1시간 이상<br>※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 연 1회, 1시간 이상<br>※ 연 1회는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시간은 지침상 규정됨                            |
| 교육 목적    |      |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br>-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br>-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 문화 조성          |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br>- 타인에 대한 배려                                                   |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
| 교육 실적 보고 |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출처: 여성가족부, 『201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2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 학교,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2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폭력예방교육에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를 고민하며

김홍미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번 학술포럼의 제목에서 ‘성’없이 ‘폭력예방교육’을 호명한 것처럼 성과 폭력은 생각보다 자주, 특별한 질문 없이 분리와 합체를 반복해왔는지도 모른다. 발제문을 읽으며 왜 이 학술포럼의 제목은 성폭력예방교육이 아니라 폭력예방교육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각기 다른 갈래로 논의되어온 ‘폭력’과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것인지가 고민되는 시간이다. 규모와 속도로 본다면 2015년은 폭력예방교육 제2라운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라운드를 맞이하는 지금이 폭력예방교육 관련한 여성학 지식생산의 적기가 아닐까 싶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교육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폭력예방교육에 있어서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 1. 폭력예방의 시간, 공모의 시간

“[아동폭력 피해자는 미래의 가해자] 라는 현수막이 중학교 정문 앞에 걸려있길래 27일 목요일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받으셔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해야한다는 의미로 붙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현수막은 피해아동들을 가해자로 단정짓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곧 철거할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월요일까지 그대로 있으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2014. 11. 한 지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

‘아동폭력 피해자는 미래의 가해자’라고 쓰여진 기막힌 현수막이 중학교 정문 앞에 걸렸다는 글이 아는 분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왔다. 다시 해당 사진이 올라오지 않은 걸 보면 그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현수막을 내렸는지도 모르겠다. 담벼락의 한 댓글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서 나오는 표현’이라고도 했고 (이 분이 피해자 보호를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어떤 분은 ‘아동성폭력을 바라보는 선생들의 시각이 문제’라고 했다. 이 분은 ‘아동폭력’이라고 쓰고 ‘아동성폭력’이라고 읽는다. 나는 학교 앞을 오가면서 저 현수막을 보고 읽었을 사

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위태롭게 가늠했을 것을 생각하니 이보다(교감) ‘폭력적’일 수는 없을 것도 같다고 썼다. 무엇보다도 교감이 의도한 바대로 저 현수막으로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되새길 사람은 없지 싶었다. 나도, 다른 댓글 게시자들도, 저 현수막을 건 교감선생님도, 현수막을 문제제기한 지인도 각기 다른 결로 폭력을 이해하고 딱 그만큼씩 ‘폭력’을 말한다.

‘폭력이 심각하다’는 말이 ‘요즘 애들 왜이래’라는 말 만큼이나 흔해진 지금 사람들은 저마다 ‘폭력’에 대해서 말한다. 폭력을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관련한 단어들(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등)을 낯설게 여기던 시기를 지나, 저마다 ‘한 마디씩 하는’ 시기가 됐다. 문제는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4대악 척결’이 폭력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더 짙어진 선악구도가 일군의 ‘잘못된 책임의식’을 일으키고 있다는 혐의, 그리고 그런 잘못된 책임의식이 폭력에 대한 오래된 규범들을 다시 호출하고 있는 현실은, 중학교 정문 앞에 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는 마음만큼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을 불러낸다.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말하기 쉬워진 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지킴이’라는 안전한 위치가 마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선악의 구도에서 ‘선’에 속하려는 사람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무수한 예방교육 강의 매뉴얼을 통해 강사들이 만들어 준 자리이기도 하다. 예방교육에 있어 ‘학습자가 폭력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권고된 지킴이의 자리는, 사실 폭력과 자신을 분리할 때에만 획득되는 자리다.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주와 (방관자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타자화한 자리에서 ‘그들을 지킨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폭력은 구조이기보다 개별행위이고, 지켜야할 대상은 착하고/ 선하고/ 힘없는/ 약자다. 약자가 아닌 사람(아내!), 선하지도 않고 착해보이지도 않은 피해자(꽃뱀!)를 만나면 바로 제 위치를 바꿔버리는 취약한 지킴이가 곳곳에서 ‘지킴이임’을 자처한다.

며칠 전 들은 폭력예방교육의 학습자였던 남학생들이 강사를 위협하고 강사의 차 유리창을 부순 초중고 폭력예방강사의 이야기는 생각할 꺼리 하나를 더 얹는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해온 일군의 집단은 폭력예방교육이 일어나는 한 시간 동안 강사를 공격대상으로 정하고, 실제로 공격이 가능한 정도로 분노를 (혹은 다른 감정들을) 규합한다. 강사에 대한 과격한 공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꽃뱀이나 역차별 운운하며 분한 마음을 강사에게 쏟아낼 준비는 되어있는 상태의 학습자들은 이미 흔하다. 이런 기운이 맴도는 교실에서 강사는 폭력예방을 위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폭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폭력예방’이라고 불리는 빈 수레는 꽤나 요란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화나고, 슬프고, 억울하다. 오인된 원한(resentment)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가고 뜯겨진 문제들은 개별 사건이 되어간다. 교육을 받으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요구한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는 감수성(인권? 젠더?)있는 시민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시장을 키웠고, 각종 폭력예방교육의 강사와, 강사양성교육 강사는 웃음치료, 스트레스관리, 요가, 요리치료 등을 겸한다. 발제자의 지적대로 여성주의 성정치학의 책임 방기 속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의 성별화된 구도는 곧바로 피해자-가해자 구도를 구축하며 학습자에게는 불편함을, 교수자에게는 그런 불편함의 해소를 주문한다.

## 2. 학습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교육

폭력관련 교육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 국가가 먼저 제도적으로 의무화했다는 점은 폭력 관련 교육이 학습자의 호기심에서 출발하기 어려운 지형을 구축한다. 간헐적이고 일회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도, 폭력이라는 (불편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페다고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부재도 폭력예방교육의 지형을 더 척박하게 만들어온 요소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해자와 관련된 자든 피해자와 관련된 자든, 상황에 연루된 자든 연루되지 않은 관찰자든, 아니면 상황에 개입했다가 괜히 봉변당한 투사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폭력을 경험한다. 폭력예방교육이 불편하고 복잡한건, 그 시간을 두고 굳이 폭력으로 명명할 필요가 없었던, 나와 연루된 갖가지 상황들을 자기 검열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흔하고 평범해서 굳이 ‘문제적인’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폭력으로 명명하기 두려워 망설이고 미뤄두었던 일련의 기억들을 ‘떠올려야 할 것만 같은’ 그 시간이 편할 리 없다. 요컨대 폭력이라는 주제가 불편한 건 기표가 갖는 잔인함과 가시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주요하게는 폭력이 생각보다 깊고 넓게 각자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학습자는 강사가 지목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경험들을 견주고, 자기를 정당화해줄 틈을 찾는다. ‘나는 문제가 없겠지? 내 삶의 방식을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폭력과 삶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폭력과 거리두기는 일종의 생존전략으로도 읽힌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거리, 폭력(대상)과 학습자(주체)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전통적 페다고지가 어렵지 않게 폭력관련 교육에 안착한 데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두려움들을 강의실에서 풀어헤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의 효

과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폭력예방교육이 정보전달식 교육에 머무르는 건 제도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자의 불편한 심기를 감당할 수 없는 강사의 불충분한 역량이 만들어낸 적정 합의선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가르치는 것인지,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다.

해를 더해갈수록 여가부와 양평원이 개발한 표준강의안이 ‘너무 많이 아는 학습자들’ 덕분에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이 발제문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상 및 교육연차에 따라 표준강의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학습자의 자기방어를 넘어서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한다. 그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학습자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신작 동영상을 업그레이드나 보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세부지침서를 추가하는 은행저금식 교육(프레일리, 2003)에 그친다면 학습자의 방어벽은 오히려 더 두터워질 수 있다. 여가부가 계획하는 ‘교육프로그램 맞춤형 개발’이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이유다. 폭력예방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개별 폭력의 발생 원인이나 심각성, 혹은 관련 법규가 아니라 “폭력이 나와 무관한 문제라는 인식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 3. 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있었던 <폭력예방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됐다. 토론자였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논쟁적 이슈들은 외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2015년 교육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에 명시된 동성애는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이나 찬반 논란이 뜨거운 낙태 등의 주제를 예방교육에서 외면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사실 교육부의 이번 방침만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습자들에게 섹슈얼리티의 ‘핫한’ 지형도를 그려보게 할 수 있는 텍스트도 없다. 이 핫한 지형도에 (학습자 스스로 표기할) 학습자의 ‘자기위치’는 젠더라는 단일한 억압으로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의 한계를 (학습자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질문에 대한 발제자 두 분의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 말미에 주관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행 원장은 강사의 역량 문제를 들어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 말은 강사의 역량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틀리지 않았지만, 강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역량이 없을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없다. 동성애교육 금지나 낙태 등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능한 이유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이 섹슈얼리티 교육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먼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논쟁을 줄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교육으로 변형시켜온 역사와 관련된다. 여성가족부의 표준프로그램 구성안에도 섹슈얼리티의 논쟁적인 속성은 ‘건강한 성역할’이나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흐려진다(이런 과정 역시 섹슈얼리티의 정치다). ‘타깃(테마)’별 추가 보급한다는 여가부 통합교육 교재의 중심 메시지는 “성폭력(허락), 가정폭력(관심), 성매매(공감), 성희롱(소통)(양철수, 2014:21-23, 진한 표시는 원 글 저자의 강조)”으로 조정하면서 권력으로서의 섹슈얼리티는 사라지고 개인의 선택과 배려의 영역으로 원인을 소급한다. 하지만 교육에서 학습자가 ‘나’를 호명해야할 순간은 권력의 자장에서 나를 제외시킬 때가 아니라 교차하는 자장들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아야할 때다. 섹슈얼리티를 삭제한 교육은 ‘성인식 성찰 없는 성폭력 교육’을 결과하며 기존의 성폭력 인식을 고착시키는 문제를 남긴다(김신현경, 2015).

하지만 폭력예방교육이 섹슈얼리티 교육이긴 하지만 섹슈얼리티 교육이기만 할 수 없다. 폭력예방교육이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는 건 폭력은 섹슈얼리티만이 아니라 젠더, 인종, 계급, 나이 등 권력의 작동과 주체의 움직임 사이에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연하게도, 섹슈얼리티가 폭력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섹슈얼리티를 빼고 폭력을 말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성교육이 성폭력예방교육과 결합되면서 ‘쾌락과 욕망, 폭력과 피해의 경험과 느낌이 구체적으로 토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되는 성폭력예방은 명백한 한계’(김신현경, 2015)를 갖지만, 거꾸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성‘만’을 다루는 것도 젠더/인종/계급/장애여부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사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교차’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풍성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의 발제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거나 등장하지 않는 것/ ‘등장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물어야할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 폭력예방교육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폭력’에 집중된 논의가 일어나고 그것이 익숙한 정황은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온다. 어쩌면 이것은 1990년대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분리 이후 성/폭력 논의의 분할에 대한 관찰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이 젠더위계만을 강조하거나 성/가정/성매매를 삶의 연속선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가진 것과 별개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단체가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가정폭력’ 관련 단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23)</sup> ‘가정’폭력의 이름으로 ‘가정폭력’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은 성폭력예방교육과의 통합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다.<sup>24)</sup> 통합교육 교안에서 갈등의 평화

23) 2007년 한국여성의전화는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교재로「폭력종 대화짱」을 발간하고, 2012년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폭력 없는 세상 톡톡」을 발간했다.

24) ‘가정폭력’이라는 명명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이던 ‘아내구타/아내

적 해결과 소통이라는 언어를 빌리고 ‘성인지나 인권’등의 말을 빌리는 건, ‘가정’의 문제로 가정폭력을 소급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묵도하는 가정폭력을 설명하기 위한 고군분투다. ‘가정’폭력의 ‘가정’은 섹슈얼리티와 젠더, 계급, 장애가 있다면 장애, 이주민이라면 민족 등의 권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의 한 장소를 알려줄 뿐이지만, 권력들이 작동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사실만 주목받는다.<sup>25)</sup> 통합적인 관점, 통합적인 접근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풀여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폭력예방교육에 있어서 통합은 젠더로의 귀결도 아니고, 인권이라는 뭉뚱그린 말 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합’은 무엇일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한 지킴이의 위치가 아니면서 “폭력이 나와 무관한 문제라는 인식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교육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 4.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고프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포함할 경우 13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학교가 아닌 다음에야 직장인이나 학부모, 교사, 경찰, 지역주민 대상 교육에서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예방교육 시수는 4시간에 불과하다. 성희롱/성폭/가폭/성매매 예방교육을 더한 최대치다. 그 시간도 짧지만 그래도 1시간 미만의 단타성 강의에서는 불가능했던 토론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Huisman, Martinez and Cathleen Wilson(2005)은 ‘가정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한 경찰대상 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젠더와 인종이 상호 교차하는 폭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자들이 채택한 페다고지는 race, class, gender, and sexuality와 같은 불평등한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있는 방식에 대한 티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페다고지(Collins, 1990)였다.<sup>26)</sup> 가정폭력 교육에 인종차별 이슈를 가져오는 것은

공간’을 더 이상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받은 새로운 설명방식이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여성폭력과 연결고리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가족’ 프레임을 구축(박인혜, 2011:313)하는데 기여했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이름으로는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없는 오픈 상황이 연출한다.

25) 2011년 여성회의에서 당시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활동가로 근무하던 나는 3세션 중 [폭력분과]에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단체는 폭력분과로, 장애여성상담소와 LGBT 단체는 섹슈얼리티 분과로 분류되었었다. 폭력분과로 호출된 여성폭력 단체 활동가들이 왜 자신이 [섹슈얼리티 분과]가 아니라 [폭력분과]일까를 질문하며 둘을 가르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걸로 기억한다.<sup>1)</sup>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묘하게도 가정폭력은 폭력분과에 보다 가깝고 성폭력은 섹슈얼리티 분과에 가깝다고 느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성폭력보다는 가정폭력에 가깝다고 여겼고 장애여성 상담소는 성폭력에 가깝다고 여겼다. 이것은 이주여성문제가 결혼이주여성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운동의 지형과 무관하지 않고,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여성성폭력 이슈들이 주된 목소리로 비쳐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6)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권력관계를 다룸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Crabtree and Sapp 132; Allen, Walker, and Webb). 특히 페미니스트 페다고지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능력, 다른 정체성의 표현들과 젠더가 교차하는 방식과 함께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다룬

종합적인 트레이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단계이며, 폭력피해여성과 이주민여성이 실재의 삶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논의에서도 구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연구자들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경찰의 참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본격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권력불균형 다루기(addressing power imbalances) 작업을 제안한다.<sup>27)</sup> 이 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며, 그 정체성은 서로 의존적이고, 다이나믹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다.<sup>28)</sup>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규모면에서 폭력예방교육의 두 번째 국면을 맞는 한국에서 여성학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지금 절실하게 호출 받는 이유는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의 실행이 시급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폭력예방교육의 확대는 권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그런 가능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있는 권력을 감지하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며 무력하지 않은 방식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경험해보는 일은, 어쩌면 억울함과 무력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이 시대의 감정들을 ‘희망’이나 ‘놀라움’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29)</sup>. 희망이 된 감정은 폭력이 아닌 연대로 우리를 이끌지도 모른다. 이것은 마치 꿈결 같고 거대해 보이지만 허망한 꿈도 아니고 거대하지도 않다. 페미니스트 페다고지가 폭력예방교육에 있어서 필요한가/유용한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촉발되지도 않았지만<sup>30)</sup>,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아이디어는 생경하지 않고, 제도적 토대는 준비되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같이 모여 있으니 말이다.

다(Alana Cattapan, 2012:127)

27) 이 작업은 다시 ‘사회학적 상상력’과 ‘권력과 특권’ 인식하기로 나뉜다. 전자는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연결짓는 작업으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인종에 대한 개인적 가정들이 조금씩 변화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두 번째 권력과 특권에 대한 인식은 “권력의 연속선(The Continuum of Power)” 배치를 통해 점검해볼 수 있다.

28) 예를 들어 젠더/사회계급/종교에 있어서 특권과 권력을 갖지만, 그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할 지도 모르는 프로테스탄트 게이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더욱이 젠더와 인종과 같은 정체성의 어떤 것은 겉으로 보다 잘 드러나지만 종교나 성적지향, 혹은 피해경험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체성들의 결합(The combination of identities)은 우리의 사회적 위치 혹은 입장을 만들며 우리의 경험을 구성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트레이닝의 구체적인 목표다. 연속체의 한쪽 끝에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the most power) 두고, 반대쪽 끝에 가장 취약한 권력을(the least power) 배치함으로써 이 연속체를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예를 들어, White, male, heterosexual, upper class, able-bodied, nonvictims).

29) 이 말은 그의 책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에서 ‘페미니즘이 더 이상 필요없어진 시대’에 페미니스트에게 희망이 무엇인지 사유하는 Sara Ahmed(2004)의 논의에서 빌려왔다.

30) 미국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있어서 방관자-집중 프로그램(bystander-focused programs)을 1990년대 이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중 폭력예방멘토(Mentors in Violence Prevention, MVP)프로그램은 1993년 이후 미국 전역의 대학, 군대, 스포츠 조직, 중고등학교를 망라해서 실시되어왔고, 현재는 고등학교와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Katz Heisterkamp, and Michael Fleming, 2011:685). 방관자 프로그램의 방향과 관련해서 논쟁거리가 된 것은 젠더불평등을 이 교육의 초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Heisterkamp et al(2011) 참고.

## [참고문헌]

- 박인혜. 2011.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여성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 프레일리, 파울루. 2003. 『페다고지』. 남경태 역. 그린비.
- 한국여성의전화. 2012. 「폭력없는 세상 톡톡-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한국여성의전화.
- Alana Cattapan. 2012. *(Re)Writing "Feminism in Canada": Wikipedia in the Feminist Classroom*, *Feminist Teacher*, Vol. 22, No. 2, pp. 125-136.
- Huisman, Martinez and Cathleen Wilson. 2005. *Training Police Officers on Domestic Violence and Racism*, *Violence Against Women*, Vol.11, No. 6, pp.792-821.
- Jackson Katz, H. Alan Heisterkamp and Wm. Michael Fleming. 2011. *The Social Justice Roots of the Mentors in Violence Prevention Model and Its Application in a High School Setting*,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2, pp. 1-19.
- Sara Ahmed.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